

기관정기감사



감 사 보 고 서

- 담양군·곡성군 정기감사 -

2025. 8.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3
III. 감사결과	5
1. 감사결과 총괄	5
2.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6
3.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7
(1) ■■■(징계2·주의2·통보·통보(인사자료))	8
(2) 공중보건의사 복무감독시스템 개선 필요 등(주의5·통보2)	9
(3) 위법한 근평 및 승진대상자로 사전 내정(징계·주의)	49
(4) 포상 추천제한자를 표창 대상자로 부당 추천(징계·주의·통보2)	58
(5) 공무원 병가 중 국외여행 등(주의2·통보)	67
(6)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기부채납 대상 시설 미설치 등(주의·통보)	72
(7)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부실 발급에 따른 농지 불법 취득 등(주의·통보2)	79
(8) 행정재산(미디어 홍보관) 수탁기관 부실 선정 후 방치(주의·통보)	86
(9)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미송부 및 청문 등 절차 미이행(주의2·통보2)	90

- (10) 분양계약을 미이행한 업체에 유리하도록 실시계획 변경 등(주의) 107
- (11) 산지복구비 미예치 및 조성계획 무단 변경 방지(주의·통보2) 114
- (12) 부실한 감정평가로 영업손실 과다 보상 추진(주의·통보) 120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장기간 감사원 기관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심사 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결과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 결과 등 기관별 위험도지표를 정량평가하여 후보군을 선정한 다음 기관별 이슈(언론보도 등)와 원 내외 감사정보 등을 정성평가하여 담양군과 곡성군을 2024년도 기관정기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후 2024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사각 최소화, 수용도 높은 감사결과 도출 및 자체감사기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전라남도 자체감사기구와 협력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담양군과 곡성군을 대상으로 언론보도 내용과 감사정보 등의 자료를 이용한 위험도 분석을 통해 고위험 중점 분야로 선정된 ① 내부통제, ② 주요사업, ③ 인허가 등 3개 분야를 집중 점검하였고, 전라남도 자체감사기구는 도 위임사무 및 반복 지적사항 등 통상적인 사항을 중점으로 점검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감사 인원 10명(전라남도 자체감사기구 2명 포함)을 투입하여 2024. 4. 1.부터 같은 해 5. 3.까지 20일간 본감사를 진행하고, 추가 검토 사항이 있어 같은 해 5. 7.부터 같은 해 5. 21.까지 10일간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30일간 실지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내부통제 등 취약분야의 감사결과는 감사원에서 처리하되 나머지 반복 지적사항 등 통상적인 감사결과는 전라남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2024. 5. 20.(담양군)과 같은 해 5. 21.(곡성군)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5. 8. 29.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전라남도에서는 2024. 5. 29. 감사처분심의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기관 현황¹⁾

1. 일반 현황

담양군과 곡성군의 2023년 12월 기준 인구, 면적, 예산 등은 [표 1]과 같다.

[표 1] 담양군·곡성군 일반 현황

구분	담양군	곡성군
인구	45,373	26,905
면적	455.1	547.5
예산	5.5	4.5
행정구역	1읍, 11면, 322리	1읍, 10면, 273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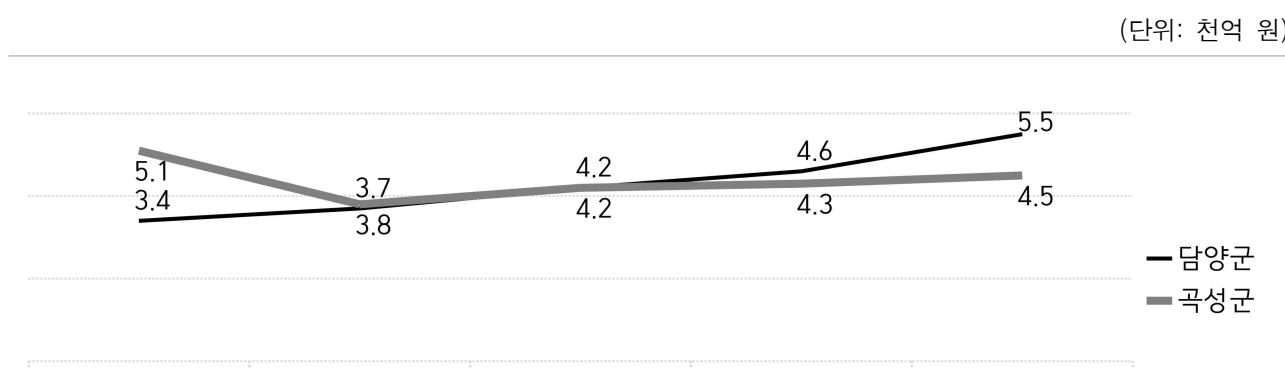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재정 현황

가. 예산 규모

담양군은 2019년 이후 예산 규모가 연평균 12.3%, 곡성군은 2.1%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도표 1]과 같이 2개 기관 모두 꾸준히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도표 1] 담양군·곡성군 예산 규모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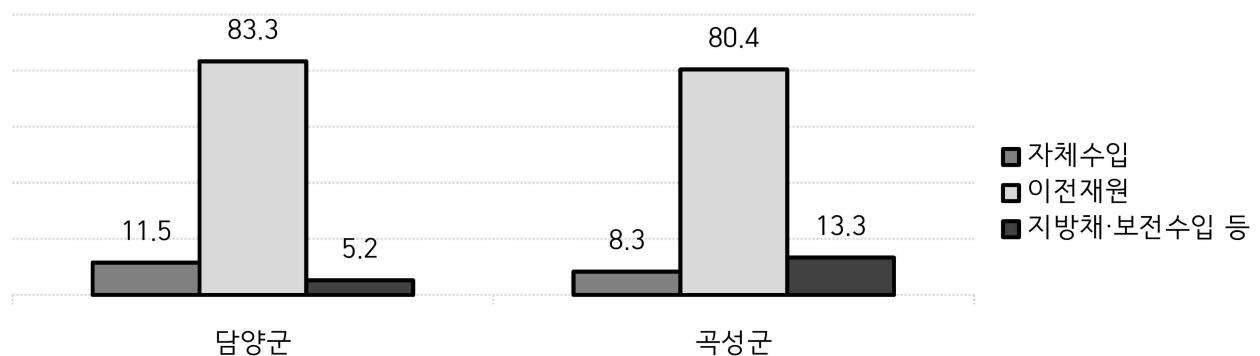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돋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나. 세입 현황

담양군과 곡성군은 [도표 2]와 같이 2019~2023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지방세 등)의 비중은 12% 미만이고, 이전재원(지방교부세 등)의 비중은 80% 이상으로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도표 2] 최근 5년간 담양군·곡성군 평균 세입 재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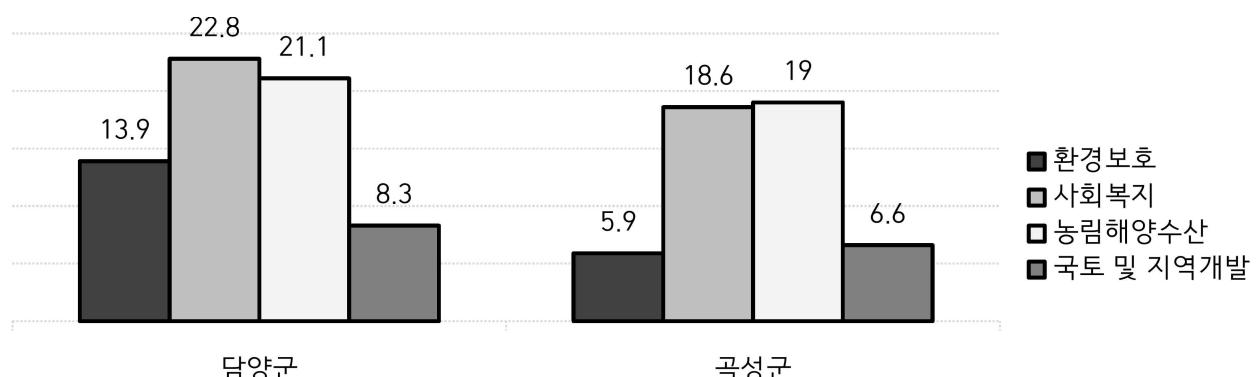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다. 세출 현황

담양군과 곡성군은 [도표 3]과 같이 2019~2023년 사회복지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담양군 43.9%, 곡성군 37.6%)의 지출 비중이 제일 높고 이어서 국토 및 지역 개발, 환경보호 순이다.

[도표 3] 최근 4년간 담양군·곡성군 주요사업 분야의 평균 지출 비율

(단위: %)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III.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 2]와 같이 총 39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이 확인되었다.

[표 2] 지적사항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합계	징계	주의	통보	통보(인사자료)
건수(인원)	39(15)	4(14)	18	16	1(1)

【 주요 문제점 】

가. 내부통제 분야

- ① 곡성군과 담양군은 병역의무를 해태한 공보의에 대해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병무청과 보건복지부는 공보의에 대한 복무 실태조사 등 복무감독시스템 개선 필요
- ② 곡성군은 균평 대상이 아닌 7급 직원을 균평 후 6급으로 승진시키거나 곡성군수가 승진 대상자를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 내정
- ③ 담양군은 6급 직원이 포상추천 제한자인데도 담양군수와 농촌진흥청장의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을 추천하거나 허위 추천서 제출

나. 주요사업 분야

- ①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자가 영리시설만 조성하고 기부채납 시설은 착공조차 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였는데도 방치
- ② 담양군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부지를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분양한 후 용도 변경

다. 인허가 분야

- ① 곡성군은 사업자로부터 산지복구비를 예치받지 않은 채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고, 사업자가 허가조건과 다르게 산림레포츠시설을 부실시공하였는데도 방치
- ② 담양군은 농업법인이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부당하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식자재 마트를 건축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고 있는데도 방치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곡성군수와 담양군수 등에게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등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를 태만히 하고, 포상 제한자에 대한 혀위 추천서를 제출
하여 포상업무를 방해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총 39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2.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1건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접수되었고, 신청내용이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의 면책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감사권의
보호관과 감사부서의 검토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면책 불인정하였다.

면책 처리결과와 면책 인정(불인정) 사유는 [표 3]과 같다.

[표 3] 적극행정면책 처리현황 개요

지적사항 요지	신청자	위원회 자문 결과	처리결과	면책 인정(불인정) 사유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공개합니다.
-

3.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명세: 별첨

감사원

징계·주의요구 및 통보·통보(인사자료)

제 목 ■■

소관 기관 ① 곡성군 ② 곡성군의회

조치 기관 ① 곡성군 ② 곡성군의회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공개합니다.

감사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공중보건의사 복무감독시스템 개선 필요 등

소 관 기관 ① 병무청 ② 보건복지부 ③ 곡성군 ④ 담양군 ⑤ 태안군

조 치 기관 ① 병무청 ② 보건복지부 ③ 곡성군 ④ 담양군 ⑤ 태안군

내 용

1. 사건 개요

병무청은 「병역법」 제34조 제1항 등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 제4조 등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자를 [표]와 같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라 한다)로 편입하여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으로 공보의¹⁾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복무 위반사항이 확인된 공보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복무기간 5배 연장 처분, 공보의 신분 박탈, 고발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표] 연도별 공보의 편입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의사	742명	478명	511명	449명	249명
한의사	201명	231명	206명	251명	185명
치과의사	366명	324명	331명	407명	275명
계	1,309명	1,033명	1,048명	1,107명	709명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1) 농어촌의료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공보의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보의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고, 공보의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병무청으로부터 공보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공보의에게 근무할 지역을 정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한 후 해당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공보의가 군 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되도록 지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공보의에 대한 근무상황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 등은 농어촌의료법 제14조 등에 따라 공보의의 복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복무 위반사항이 확인된 공보의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4. 4. 1.~5. 21.) 중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자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²⁾(이하 “PHIS”라 한다)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및 처방자료, 국세청의 소득자료 등을 활용하여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곡성군과 담양군 및 태안군³⁾에서 복무하거나 복무 중인 공보의의 복무실태와 이에 대한 각 군의 지도·감독실태 및 병무청과 보건복지부 등이 실시한 공보의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다.

그 결과 곡성군⁴⁾과 담양군⁵⁾ 및 태안군은 공보의가 연가 사용 없이 비대면 진단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그대로 두는 등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이란 전국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보건 진료소)의 업무 통합 운영 정보시스템임

3) 보건복지부의 공보의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태안군 보건의료원의 경우 공보의가 휴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도록 허용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에 대해 근무지 이탈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겸직금지 위반으로만 처분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태안군 보건의료원의 공보의도 복무실태를 점검함

4) 곡성군은 8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7,631백만여 원을 사용함

5) 담양군은 11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9,649백만여 원을 사용함

그리고 병무청과 보건복지부는 공보의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 PHIS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은 채 민원 등에 의존한 일회성 조사를 하고 있었고, 권한 없는 시장·군수 등에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내버려 둠에 따라 제대로 된 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⁶⁾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 공보의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 등

가. 휴가 승인 없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공보의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

1)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농어촌의료법 제7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⁷⁾으로 하고, 공보의는 군수 등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고,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제9조 제1항과 「병역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군수 등은 공보의가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그 사실을 자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어촌의료법 제9조 제2항과 제3항 및 제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보의가 의무복무기간⁸⁾ 중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를

6) 감사원은 2024. 5. 22. 병무청 및 보건복지부와 공보의 복무감독시스템에 대해 개선방안 등을 논의함

7) 「병역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공보의는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는 그 이탈일수 및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⁹⁾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공보의 신분을 박탈¹⁰⁾하도록 되어 있다.¹¹⁾

아울러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공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곡성군은 ⑨면보건지소 공보의 AI(한의사, 의무복무기간 2021. 4. 12. ~ 2024. 4. 11.)가 침술 처방을 하지 않아¹²⁾ 환자가 없자¹³⁾ 진료시간에 관사에 머물면서

8) 「병역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공보의가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9) 농어촌의료법 제9조 제6항에 따르면 공보의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근무기간 연장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10) 「병역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신분이 박탈되어 편입이 취소된 공보의는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 또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되어 있음

11) 「병역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공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하고, 공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보의 편입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

12) 곡성군이 공보의 AI에 대한 복무상황 점검결과(2022. 7. 7.)를 보면 공보의 AI는 침술 처방을 하지 않고 상담만 함께 따라 환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근무시간에 건강증진실에서 운동을 하거나 진료실 불을 끄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13) AI는 주민들이 사물놀이를 하느라 보건지소에 방문하지 않아 진료실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⑨면보건지소 담당자 AJ 등은 주민들이 침술 처방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보건지소에 방문하지 않아 진료행위가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함

진료실에 내려오지 않는 등¹⁴⁾으로 ⑨면보건지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2022. 4. 14.부터 2024. 2. 29.까지 총 363일¹⁵⁾ 동안 휴가 승인 없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었다.¹⁶⁾

그리고 곡성군은 ④지소 공보의 AK(의무복무기간 2023. 4. 28. ~ 2026. 4. 27.)가 2023. 5. 1.부터 2024. 2. 29.까지 게임¹⁷⁾ 등을 하기 위해 관사에 머물면서 진료실에 내려오지 않는 등으로 총 79일 5시간 동안 휴가 승인 없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었다.¹⁸⁾

또한 담양군은 ⑤보건지소 공보의 AL(의무복무기간 2021. 4. 12. ~ 2024. 4. 11.)과 ⑥보건지소 공보의 AM(의무복무기간 2021. 4. 12. ~ 2024. 4. 11.)이 과음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조기퇴근을 하는 등으로 각각 총 7일 5시간¹⁹⁾과 6일 6시간²⁰⁾ 동안 휴가 승인 없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었다.²¹⁾

아울러 담양군은 ⑦보건지소 공보의 AN²²⁾(의무복무기간 2019. 4. 8. ~ 2022. 4. 7.)이 2021. 6. 25. 담양군으로부터 2021. 7. 16.부터 8. 14.까지(근무일수 21일) 국외여행²³⁾ 승인을 받은 후 2021. 7. 16.부터 8. 4.까지(근무일수 14일²⁴⁾)만 연가

14) AI가 휴가 승인 없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음에 따라 ⑨면보건지소 담당자 AJ는 2023. 12. 26.부터 2023. 12. 29. 까지 4일간 AI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함

15) AI가 ⑨면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시작한 2022. 4. 14.부터 근무상황을 확인하였고, ⑨면보건지소 팀장 AJ와 주무관 AO는 AI가 단 하루도 진료실에 상주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AI는 담당자와 팀장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음

16) AI는 PHIS에 30일 이상 접속하지 않아 계정이 차단되어 2023. 11. 16. 복구함. 개별 공보의의 PHIS 복구날짜는 확인되나 미접속한 기간과 계정이 차단된 날짜는 확인되지 않음

17) AK는 관사에 있는 본인 소유의 컴퓨터로 로스트 아크게임을 주로 했다고 진술함

18) AK는 PHIS에 30일 이상 접속하지 않아 계정이 차단되어 2024. 2. 13. 복구함

19) ⑤보건지소 담당자 AP와 팀장 AQ는 공보의 AL이 47일 7시간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으나, AL은 2023. 5. 8.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경고 처분과 급여(업무활동장려금) 정지 처분을 받아 그 이후부터는 똑바로 근무하였다라고 이를 부인하면서 7일 5시간에 대해서만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함

20) ⑦보건지소 담당자 AR과 팀장 AS는 공보의 AM이 35일 5시간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으나, AM은 매일 조기퇴근을 한 것은 아니고 월요일이나 금요일에만 피곤해서 17:00에 조기퇴근을 했다고 이를 부인하면서 6일 6시간에 대해서만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함

21) AL과 AM은 PHIS에 30일 이상 접속하지 않아 계정이 차단되어 각각 2024. 1. 11.과 2023. 12. 28. 복구함

22) AN은 2019. 4. 8.부터 2021. 4. 13.까지 해남군에서 복무 후 2021. 4. 14.부터 담양군에서 복무함

23) AN은 영국 의사면허시험 및 프랑스 의료전문영어시험 응시를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함

등을 신청한 후 나머지 근무일(7일²⁵⁾)은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었다.²⁶⁾

나. 응급실 근무 공보의에 대해 근무지 이탈 허용²⁷⁾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 지침, 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7.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따르면 공보의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고, 복무감독기관의 장은 공보의에게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이하 “당직근무”라 한다)를 명할 수 있으며, 당직근무를 한 공보의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고, 개별적인 유연 근무는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태안군은 태안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의 경우 당직근무가 없는 평일에 휴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근무지를 이탈하도록 허용하고 있다²⁸⁾

다. 공보의 간 비대면 진단서 발급 및 행사 방치 등

1)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운영지침 7. 다. 공중보건의사의 휴가에 따르면 공보의²⁹⁾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³⁰⁾ 특별휴가로 구분하되 휴가를 원하는 공보의는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공보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24) 2021. 7. 16.(금), 7. 19.(월), 7. 20.(화), 7. 21.(수), 7. 22.(목), 7. 23.(금), 7. 26.(월), 7. 27.(화), 7. 28.(수), 7. 29.(목), 7. 30.(금), 8. 2.(월), 8. 3.(화), 8. 4.(수) 등 계 14일임

25) 2021. 8. 5.(목), 8. 6.(금), 8. 9.(월), 8. 10.(화), 8. 11.(수), 8. 12.(목), 8. 13.(금) 등 계 7일임

26) 담양군은 당시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주력하느라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함

27) 태안군이 응급실 근무 공보의에 대해 휴가 사용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도록 허용하였으므로 [별표 5] “8일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공보의 현황”에는 미반영함

28) 태안군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의 경우 당직근무가 없는 평일에 휴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근무지를 이탈하도록 허용하면서 소재파악도 하지 않음

29) 농어촌의료법 제9조 제8항에 따르면 공보의의 복무에 대하여는 농어촌의료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 공무원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30)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보의가 수련의, 전공의 및 전임의 시험에 응시(2일 이내)하거나 헌혈에 참가한 경우(4시간 이내)에는 공가 사용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음

수행할 수 없을 때 및 감염병에 걸려 그 공보의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운영지침 7. 다. 공중보건의사의 휴가에 따르면 연차별³¹⁾(기산일은 복무 개시일로부터 한다)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병가의 기간은 복무기관의 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보의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직무 수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의적 병가처리 등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병역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과 운영지침 7. 다. 공중보건의사의 휴가에 따르면 공보의는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의료법」 제17조 제1항과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료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등을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형법」 제233조와 제234조에 따르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진단서를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공보의 간 비대면 진단서 발급 및 행사 방치

그런데 곡성군은 [별표 1] “곡성군 공보의 간 비대면 진단서 발급 및 행사한

31) 운영지침에 따르면 연가는 기산일을 매년 1. 1로 하고,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복무개시일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현황”과 같이 ④보건지소 공보의 AX(의무복무기간 2020. 3. 5.~2023. 3. 26.), ③지소 공보의 AT(의무복무기간 2021. 4. 6.~2024. 4. 27.), ③지소 공보의 AU(의무복무기간 2020. 3. 5.~2023. 3. 26.), ⑨면보건지소 공보의 AV(의무복무기간 2021. 3. 12.~2024. 4. 2.)가 2021. 12. 2.부터 2024. 2. 22.까지 연차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 공보의 간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은 채 전화 등으로 요청하거나 요청받아 진단서를 각각 9회, 17회, 4회, 3회 발급하고, 6회, 8회, 3회, 11회 행사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곡성군은 ④지소 공보의 AW(의무복무기간 2021. 4. 6.~2024. 4. 27.)가 2023. 3. 20. 공보의 AT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은 채 전화로 요청받아 진단서(관절통)를 1회 발급하였고, ③지소 공보의 AY(의무복무기간 2021. 4. 12.~2024. 4. 11.)가 직접 대면하여 진료받지 않은 채 같은 보건지소 공보의 AT로부터 진단서(관절통 등)를 발급받아 6회 행사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었다.

특히 곡성군은 공보의 AU, AV, AT가 공보의 AX, AT, AY의 요청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2022. 8. 8.부터 2023. 9. 15.까지 PHIS에 진료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비대면 진단서를 각각 1회, 2회, 1회 발급하고 행사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었다.

곡성군 공보의 간 비대면 진단서 발급 및 행사 사례

- 공보의 AX는 2022. 3. 7. ⊖④보건지소 주무관 AZ에게 환자로 방문하지 않은 공보의 AT, AV를 접수해 달라고 부탁한 후, 다음 날인 2022. 3. 8.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함
- AX는 2022. 11. 24. 공보의 AV의 요청에 따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은 채 관인이나 사인도 없는 진단서를 발급함
- 공보의 AT는 같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AY의 요청에 따라 2023. 9. 15.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거나 PHIS에 진료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함
※ AY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2023. 9. 15. 공가로 보건지소에 있지 않았고, AT는 자신이 발급한 진단서로 AY의 병가(2023. 9. 18.~9. 20.)를 대신 기안함
- 공보의 AU는 같은 ④보건지소 의대 동기인 ⊖④보건지소 공보의 AX의 요청에 따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4회(2022. 3. 11., 2022. 4. 6., 2022. 4. 14., 2022. 8. 8.) 발급해 주었고, 2022. 8. 8. 발급한 진단서의 경우 PHIS에 진료기록도 남기지 않음
- 공보의 AV는 ③지소 공보의 AT의 요청에 따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은 채 2022. 8. 31.과 2023. 7. 24. PHIS에 진료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함(2022. 8. 31. 발급한 진단서의 경우 진단일이 2022. 5. 18.로 되어 있음)
- AV가 2023. 7. 24. 발급한 진단서의 경우 병명은 급성 코인두염(감기)으로 되어 있는데도 조치는 급성 장염으로 설사, 복통이 지속되어 3일 이상 휴식이 필요하고 증상 지속 시 수액 및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AT는 AV가 2023. 7. 24. 발급한 진단서로 2023. 7. 19. 병가(2023. 7. 24.~7. 25.)를 신청하여 승인받음

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 신청 승인 등

곡성군은 ⊖④보건지소 공보의 AX가 연차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 2021. 12. 2.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1일의 병가를 신청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는 등 소속 공보의 20명이 연차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 [별표 2] “곡성군 공보의의 위법한 병가 등 사용 현황”과 같이 2019. 5. 16.부터 2024. 3. 18.까지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비대면 진단서 포함) 병가를 신청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였다.³²⁾

그리고 담양군은 ⊖④보건지소 공보의 BA(의무복무기간 2017. 4. 10.~ 2020. 4. 9.)가 연차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 2020. 3. 9. 진단서를 첨부

32) 곡성군은 ⊖③지소 공보의 AU(의무복무기간 2020. 3. 5.~2023. 3. 26.)가 2023. 1. 19. 수련의 시험과 면접을 사유로 공가(2023. 1. 30.~1. 31.)를 신청하여 하루(2023. 1. 30.)만 면접에 참여한 후 1일은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여 그대로 둠

하지 않고 1일의 병가를 신청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는 등 소속 공보의 8명이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 [별표 3] “담양군 공보의의 위법한 병가 사용 현황”과 같이 2020. 1. 8.부터 2022. 2. 7.까지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병가를 신청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였다.

다) 직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운 진단서 등이 첨부된 병가 신청을 그대로 승인³³⁾)

담양군은 ④보건지소 공보의 BB(의무복무기간 2020. 4. 6.~2023. 4. 5.)가 2021. 12. 23.부터 2023. 2. 21.까지 총 15차례 병가를 신청하면서 최대 8개월 전인 2021. 12. 10.과 2022. 6. 17. 발급된 진단서(병가 필요기간 미명시, 방아쇠 손가락 통증)³⁴⁾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는데도 직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BB의 병가 신청을 모두 승인하였다.

그리고 곡성군은 보건의료원 공보의 BC(의무복무기간 2020. 4. 6.~2023. 4. 5.)가 2021. 11. 26.과 2022. 9. 23. 병가 필요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알러지 결막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2021. 12. 3.부터 2023. 2. 17.까지 총 11차례 병가를 신청³⁵⁾하였는데도 직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BC의 병가 신청을 모두 승인하였다.

33) 곡성군과 담양군이 해당 공보의의 병가 신청에 대하여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병가를 승인하였으므로 [별표 5] “8일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공보의 현황”에는 미반영함

34) 담양군 ④보건지소 담당자 BD와 BE는 BB가 평소 손, 발 등 특별히 불편하거나 아픈 곳이 없어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 적은 없었다고 확인함

35) 곡성군은 BC가 2021. 12. 17. 진단서 첨부 없이 병가를 신청하였는데도 그대로 승인함

곡성군 공보의 병가 부실 승인 추가 사례

- 곡성군은 보건의료원 공보의 BF(의무복무기간 2021. 4. 12.~2024. 4. 11.)가 2024. 3. 6. 병가를 신청하면서 최대 7개월 전인 2023. 8. 12. 발급된 진단서(병가 필요기간 미명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는데도 그대로 승인함
- 곡성군은 보건의료원 공보의 BG(의무복무기간 2018. 4. 16.~2021. 4. 15.)가 2020. 1. 30. 등 3회에 걸쳐 병가를 신청하면서 병가 필요기간(3일)이 경과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는데도 그대로 승인함
- 곡성군은 ③지소 공보의 AY가 2024. 2. 28. 병가 사유가 되지 않는 라색 진단서를 첨부하여 2024. 3. 4.부터 2024. 3. 12.까지 병가를 신청하였는데도 그대로 승인함³⁶⁾

라) 연장 복무 대상자를 조기 전역

태안군 보건의료원 **■**과 BH는 보건의료원 공보의 BI(의무복무기간 2019. 4. 8.~2022. 4. 7.)가 [별표 4] “태안군 공보의 BI의 병가 사용 현황”과 같이 2019. 6. 5.부터 2022. 2. 7.까지 36차례에 걸쳐 의무복무기간 중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30일을 초과하여 55일 4시간의 병가를 사용하였는데도 BI의 총 병가사용 일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2. 3. 11. 충청남도에 BI를 복무만료예정 공보의로 제출하는 “2022년 4월 복무만료예정 공중보건의사 명단 제출” 공문을 기안하여 **■**팀장 BJ 등에게 결재를 올렸고, BJ 등은 이를 그대로 결재한 후 충청남도에 통보³⁷⁾함에 따라 BI는 25일 4시간을 연장 복무하지 않고 2022. 4. 7. 복무만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별표 5] “8일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공보의 현황”과 같이 곡성군 공보의 AT 등 5명과 담양군 공보의 AL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등 공보의의 병역의무 해태를 조장하거나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이 저해되었으며, 취약지역

36) 곡성군은 AY의 라색 수술의 경우 시력 교정목적의 수술이므로 병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함

37) 「병역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보의의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기간 만료대상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음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보의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었다.

3. 행정처분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방치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병역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공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어촌의료법 제9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보의가 의무복무기간³⁸⁾ 중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는 그 이탈일수 및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³⁹⁾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병무청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공보의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도록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2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도 직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채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행정처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 중 247건(247명)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곡성군 등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공보의에 대해

38) 「병역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공보의가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

39) 농어촌의료법 제9조 제6항에 따르면 공보의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근무기간 연장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도록 행정처분할 권한이 없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의 5배만큼 연가로 공제⁴⁰⁾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양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13명의 공보의에 대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의 5배만큼 연가로 공제하는 조치도 없이 그대로 두거나 경고, 주의조치만 하고 있었다.

4. 공보의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개선 필요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병역법」 제4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8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보의 등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공중보건 업무에 복무했는지 여부와 근무시간 외에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⁴¹⁾

그리고 공보의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 등을 하기 위해서는 PHIS에 접속하여야 하고,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국외여행 일자 등을 기재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차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한편, 공보의 복무감독 기관에서는 공보의의 개인별 근무상황부를 작성·비치⁴²⁾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무청이 공보의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는 공보의가 PHIS에 접속한 현황과 공보의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현황 및 공보의 복무감독 기관에서

40) 곡성군은 2022. 7. 25. 공보의 AV가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의 5배에 해당하는 연가를 공제하였고, 담양군은 2021. 5. 26., 2022. 9. 19., 2023. 5. 11. 공보의 AL과 AM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의 5배에 해당하는 연가를 공제함

41) 운영지침 10. 복무 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병무청과 공동으로 공보의의 복무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군수로 하여금 복무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42) 운영지침 7. 나. 2)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관리에 따르면 공보의 복무관리 감독기관의 장은 소속 공보의에 대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 근무상황을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음

보유한 근무상황부 등을 비교·대조하는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면 공보의의 직무 종사 여부 등을 쉽게 점검할 수 있다.

그리고 실태조사 시 연차별 6일을 초과하는 공보의 병가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연가 사유인데도 병가를 신청하고,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하며, 의무복무 기간 중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병가기간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었는지 등을 쉽게 점검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병무청은 실태조사 시 공보의가 PHIS에 접속한 현황과 공보의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현황 및 공보의 복무감독 기관에서 보유한 근무상황부 등을 비교·대조하거나 공보의가 연차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한 현황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채 불시급습이나 민원에 의존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 실태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공보의의 복무에 대한 현지 지도와 제도운영상 개선사항 발굴⁴³⁾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5. 공보의의 복무 해태 방지 등을 위한 운영지침 개정 필요

지방자치단체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의 경우 휴가 승인 권자가 보건지소에서 같이 근무하지 않아(보건소 등 상급기관에서 근무) 공보의가 휴가 승인 없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이를 알기 어렵고, 공보의와 함께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1~2명)은 공보의의 휴가 여부를 알 수 없어 공보의의 복무 해태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렵다.

그리고 공보의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을 하는 등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기

43)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실태조사반은 공보의의 복무에 대한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제도운영상 개선사항을 발굴하도록 되어 있음

위해서는 PHIS에 접속하여야 하는데, 근무 중인 공보의가 PHIS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거나 계정이 차단되었다면 복무를 해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33조 제3항과 제7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등의 출퇴근 관리는 전자식 출입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록 하고,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문연구요원 등의 출퇴근 기록을 개인별로 매일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전문연구요원의 출퇴근 기록을 홍체 인식이나 QR코드 인식 등으로 하는 등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 해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복무관리 감독기관의 장이 소속 공보의에 대하여 개인별로 근무상황을 기록·유지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한 후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할지, 휴가 승인권자와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에 대한 복무 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⁴⁴⁾ 근무 중인 공보의가 PHIS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거나 계정이 차단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⁴⁵⁾ 등의 실효성 있는 복무 해태 방지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 병무청의 경우

-
- 44) 휴가 승인권자와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의 경우 공보의의 휴가 승인 사실을 공람 등을 통해 공보의와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공보의가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공보의의 휴가 여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고, 공보의가 복무를 해태할 경우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45) 근무 중인 공보의가 PHIS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거나 계정이 차단되면 복무관리 감독기관장에게 통보하여 복무 해태 여부를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병무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공보의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 PHIS 접속기록, 국외여행 허가현황, 출입국 자료 등을 근무상황부와 비교·대조하는 등으로 실태조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내실 있는 복무점검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병역법」을 위반한 공보의들에 대해 적정한 조치 등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에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 공보의가 PHIS에 장기간 미접속 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등 공보의의 복무 해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병무청 등과 공보의의 복무 실태조사 시 PHIS 자료와 연가·병가 등 근무 상황 등을 활용하여 점검하겠으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공보의와 비대면 진단서를 작성·행사한 공보의 등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는 한편, 공보의 복무실태와 관련된 운영지침 개정 등을 추진하여 공보의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⑤ 곡성군의 경우

곡성군은 감사결과에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 공보의 복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복무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적정한지 철저히 확인하고, 공보의가 장기간 PHIS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 복무 점검을 하여 공보의의 복무 해태 방지에 노력하는 등 공보의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⑥ 담양군의 경우

담양군은 감사결과에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공보의 휴가 승인 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팀장과 담당자를 결재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병가의 기간은 공보의의 직무수행 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병가가 본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PHIS 접속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으로 공보의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태안군의 경우

태안군은 공보의의 복무 관리에 대하여 미흡하였던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운영지침에 따라 공보의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응급실 공보의에 대해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공보의의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 곡성군 공보의의 경우

ⓐ 비대면 진단서 발급 및 행사 관련

곡성군 공보의 AX, AT, AV, AY, AU는 비대면 진단서 발급 및 행사와 관련하여 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에 직접 대면하여 진료 후 진단서를 발부하였다는 주장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지소 담당자들은 환자로서 공보의를 해당 보건지소에서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별표 6] “비대면 진단서 관련 곡성군 공보의의 주장과 검토결과”와 같이 해당 보건지소 출입현황과 초과근무 내역을 보면 위 공보의들이 보건지소 담당자보다 일찍 출근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보건지소 담당자들이 출근하기 전에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PHIS 진료기록, 병가 결재 과정 및 전후 상황 등을 검토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AU는 AX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부하였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AX는 직접 진료를 받았고 AU가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부인하고만 있다.

게다가 위 사람들은 공보의도 같은 의사로서 진단서를 발부하든 발급받든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일반병원에 가면 대기시간도 많이 걸려 굳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보다 같은 공보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보의 간 처방전 없이 진단서만 발부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은 공보의 간 진단서를 발급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의사와 환자로서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은 채 연차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하고 행사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위 사람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AU의 경우

공보의 AU는 시력이 떨어지는 것도 질병이고 라식(양안 스마일) 수술도 시력을 교정하는 것이자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므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복무업무 편람」에 따르면 라식 수술을 받는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안구 관련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AU는 시력 교정목적으로 라식 수술을

한 것이므로 AU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곡성군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병가를 승인하였으므로 [별표 5] “8일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공보의 현황”에는 반영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AI의 경우

공보의 AI는 진단서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등을 잘못 첨부하거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잘못 첨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I는 연차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첨부하지 않은 채 처방전 등을 활용하여 병가를 신청하였고, 어머니 병간호 등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AI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AI는 주민들이 사물놀이를 하느라 보건지소에 방문하지 않아 진료실 적이 없었고, 2022. 4. 14.부터 단 하루도 1층 진료실에 상주하지 않았다는 담당자 (AO)와 팀장(AJ)의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⑤면보건지소 팀장 AJ 등은 주민들이 AI로부터 침술 처방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보건지소에 방문하지 않아 진료행위가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이고, AI가 진료실에 상주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곡성군이 AI에 대한 복무상황 점검결과(2022. 7. 7.)에서도 AI가 침술 처방을 하지 않고 상담만 함에 따라 환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근무시간에 건강증진실에서 운동을 하거나 진료실 불을 끄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AI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AK의 경우

공보의 AK는 입대 후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 공보의 동기들과 달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곡성군에 와서도 별다른 안내나 교육을 받지 못하여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으며, 근무시간에 관사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도 누구 하나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어 괜찮다고 잘못 생각하였으나 관사에 머문 것은 잘못되었 으므로 남은 복무기간에는 성실히 근무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⑤ 담양군 공보의의 경우

담양군 공보의 AL은 근무시간에 조기 퇴근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관사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보의로 잘못한 부분이나 실수한 부분에 대해 처벌보다는 기회를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병무청장은

① ('2항'과 관련하여) 복무가 만료되었으나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 AT, AV, AY, AI, AL 등 5명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 제2항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② ('2항'과 관련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병가 일수(30일) 보다 25일 4시간 더 많이 사용한 공중보건의사 BI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며

③ ('4항'과 관련하여) 내실 있는 복무점검이 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 실태조사 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진료기록, 국외여행 휴가현황 등을 근무상황부와 비교·대조하는 등으로 실태조사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④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도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참고하는 등으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 점검 계획을 수립한 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⑤ ('3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실태조사 시 복무 위반 공중보건의사가 적발되면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은

① ('2항'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 AK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에 따른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② ('2항'과 관련하여)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은 채 서로를 위해 진단서를 발급하고 행사한 공중보건의사 AX, AT, AV, AY, AU 등 5명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의료법」 제66조 등에 따른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며

③ ('5항'과 관련하여) 내실 있는 복무점검이 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출퇴근 관리 방법,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접속 상황 점검 방법, 휴가 결재과정 등에 대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④ 병무청과 협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도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참고하는 등으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 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⑤ ('3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실태조사 시 복무 위반 공중보건의사가 적발되면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곡성군수는 ('2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연차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할 경우 진단서 첨부를 누락하지 않았는지, 비대면 진단서를 첨부하였는지, 공중보건의사가 직무수행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공중보건의사가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담양군수는 ('2항'과 관련하여)

① 앞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연차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할 경우 진단서 첨부를 누락하지 않았는지, 비대면 진단서를 첨부하였는지, 공중보건의사가 직무수행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② 공중보건의사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국외여행을 하도록 승인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태안군수는 ('2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보건의료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당직근무가 없는 평일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도록 허용하거나 연장 복무 대상자를 조기 전역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 보건의료원 캐파 BH(현 코파)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표 1]

곡성군 공보의 간 비대면 진단서 발급 및 행사한 현황

연번	발급일	병명	곡성군 보건지소명	접수자 등	행사 공보의명	발급 공보의명	
1	2022. 1. 10.	급성 코인두염 등 (감기)	④보건지소	AX	AT	AX	
2	2022. 1. 24.						
3	2022. 2. 21.			AZ	AV		
4	2022. 3. 8.				AT		
5	2022. 3. 8.				AV		
6	2022. 4. 13.			AX	AU		
7	2022. 4. 15.			AZ			
8	2022. 6. 28.			AX	AV		
9	2022. 11. 24.						
1	2021. 12. 2.	설사	③보건지소 관절통 등	-	AV	AT	
2	2021. 12. 10.	기관지염					
3	2021. 12. 17.	설사		AT	AX		
4	2022. 1. 14.				AV		
5	2022. 1. 20.				AX		
6	2022. 1. 28.				AX		
7	2022. 2. 25.				AY		
8	2022. 7. 8.			-	AV		
9	2022. 7. 22.			AT	AY		
10	2022. 8. 3.				AV		
11	2022. 8. 23.				AY		
12	2022. 8. 30.				AV		
13	2023. 1. 6.				AU		
14	2023. 2. 23.				진료기록 없음	AY	
15	2023. 9. 15.			AT			
16	2023. 11. 13.						
17	2024. 2. 22.	급성 코인두염 등 (감기)	④⑤보건지소				
1	2022. 3. 11.	급성 코인두염 등 (감기)	④⑥지소	BQ	AX	AU	
2	2022. 4. 6.			AU			
3	2022. 4. 14.			AU			
4	2022. 8. 8.			진료기록 없음			
1	2022. 5. 18.	급성 장염 등	⑤면보건지소	AJ	AT	AV	
2	2022. 8. 31.			진료기록 없음			
3	2023. 7. 24.			진료기록 없음			
1	2023. 3. 20.	관절통	④지소	-		AW	

자료: 곡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곡성군 공보의의 위법한 병가 등 사용 현황

연 번	소속	공보의 명	병가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 (총 병가 일수)	위법 사유 등 특이사항 ^{주)}
			신청일	승인일	사용일		
1	곡성군	AX	2021. 3. 2.			병가 5시간	진단서 없음
			2021. 10. 14.	2021. 10. 15.	2021. 10. 14.	병가 2시간	
			2021. 11. 4.	2021. 11. 8.	2021. 11. 4.	병가 2시간	진단서 없음
			2021. 12. 2.			병가 1일	
			2021. 12. 28.			병가 3시간	
			2022. 1. 14.			병가 1일	비대면 진단서(2022. 1. 14. 공보의 AT 발급)
			2022. 1. 28.			병가 1일	비대면 진단서(2022. 1. 28. 공보의 AT 발급)
			2022. 3. 11.			병가 3시간	비대면 진단서(2022. 3. 11. 공보의 AU 발급)
			2022. 4. 6.			병가 2시간	비대면 진단서(2022. 4. 6. 공보의 AU 발급, 발병일 및 진단일 없음)
			2022. 4. 14.	2022. 4. 18.	2022. 4. 14.	병가 4시간	비대면 진단서(2022. 4. 14. 공보의 AU 발급)
			2022. 8. 8.			병가 4시간	비대면 진단서(2022. 8. 8. 공보의 AU 발급, 발병일·진단일 및 진료기록 없음)
소계						6일 1시간 (26일 6시간)	
2	곡성군	AT	2022. 1. 10.			병가 1일	비대면 진단서(2022. 1. 10. 공보의 AX 발급)
			2022. 1. 24.			병가 1일	비대면 진단서(2022. 1. 24. 공보의 AX 발급)
			2022. 2. 21.			병가 1일	비대면 진단서(2022. 2. 21. 공보의 AX 발급)
			2022. 3. 7.	2022. 3. 14.	2022. 3. 7.	병가 1일	비대면 진단서(2022. 3. 8. 공보의 AX 발급)
			2022. 5. 18.	2022. 5. 19.	2022. 5. 18.~ 2022. 5. 20.	병가 2일 5시간	비대면 진단서(2022. 5. 18. 공보의 AV 발급)
			2022. 8. 30.	2022. 8. 31.	2022. 8. 31.~ 2022. 9. 1.	병가 2일	비대면 진단서(2022. 8. 31. 공보의 AV 발급, 진단일이 2022. 5. 18.이며 진료 기록 없음)
			2023. 3. 17.		2023. 3. 20.	병가 1일	비대면 진단서(2023. 3. 20. 공보의 AW 발급) 금요일(3. 17.)에 다음 주 월요일 병가 미리 신청
			2023. 7. 19.		2023. 7. 24.~ 2023. 7. 25.	병가 2일	비대면 진단서(2023. 7. 24. 공보의 AV 발급, 발병일 및 진료기록 없음) 수요일(7. 19.)에 다음 주 월·화요일 병가 미리 신청
소계						11일 5시간 (29일)	

연 번	소속	공보의 명	병가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 (총 병가 일수)	위법 사유 등 특이사항 ^{주)}	
			신청일	승인일	사용일			
3	곡성군	AV		2021. 12. 2.	2021. 12. 2.~ 2021. 12. 3.	병가 1일 4시간	비대면 진단서(2021. 12. 2. 공보의 AT 발급)	
				2021. 12. 10.		병가 1일	비대면 진단서(2021. 12. 10. 공보의 AT 발급)	
				2021. 12. 17.		병가 1일	비대면 진단서(2021. 12. 17. 공보의 AT 발급)	
				2022. 1. 7.		병가 4시간	진단서 없음	
			2022. 1. 20.	2022. 1. 21.	2022. 1. 20.	병가 2일	비대면 진단서(2022. 1. 20. 공보의 AT 발급)	
			2022. 1. 21.	2022. 1. 24.	2022. 1. 21.		비대면 진단서(2022. 1. 20. 공보의 AT 발급)	
			2022. 3. 7.	2022. 3. 14.	2022. 3. 7.	병가 5시간	비대면 진단서(2022. 3. 8. 공보의 AX 발급)	
			2022. 4. 13.	2022. 4. 18.	2022. 4. 13.	병가 1시간	비대면 진단서(2022. 4. 13. 공보의 AX 발급)	
				2022. 7. 21.	2022. 7. 22.	병가 3시간	비대면 진단서(2022. 7. 22. 공보의 AT 발급)	
				2022. 8. 22.	2022. 8. 23.	병가 1일	비대면 진단서(2022. 8. 23. 공보의 AT 발급, 진단일이 2022. 7. 22.)	
				2022. 8. 29.	2022. 8. 30.	병가 3시간	비대면 진단서(2022. 8. 30. 공보의 AT 발급, 진단일이 2022. 8. 23.)	
			2022. 11. 23.	2022. 11. 24.	2022. 11. 24.	병가 3시간	비대면 진단서(2022. 11. 24. 공보의 AX 발급, 관인 없음)	
				2023. 1. 6.		병가 4시간	비대면 진단서(2023. 1. 6. 공보의 AT 발급)	
				2023. 2. 27.		병가 7시간	진단서 없음	
				2023. 3. 20.		병가 3시간		
소계							10일 5시간 (29일 3시간)	
4	곡성군	AY		2022. 2. 25.	2022. 2. 28.	2022. 2. 25.	병가 1일	비대면 진단서(2022. 2. 25. 공보의 AT 발급)
				2022. 7. 8.		병가 5시간	비대면 진단서(2022. 7. 8. 공보의 AT 발급), 진단일이 2022. 2. 25.	
				2022. 8. 4.	2022. 8. 4.~ 2022. 8. 5.	병가 2일	비대면 진단서(2022. 8. 3. 공보의 AT 발급)	
				2023. 9. 15.	2023. 9. 18.~ 2023. 9. 20.	병가 3일	비대면 진단서(2023. 9. 15. 공보의 AT 발급, 별병일 및 진료기록 없음) AY는 9. 15. 공가(결핵검사) AT가 금요일(9. 15.)에 월·화·수요일 병가를 대신 기안	
				2023. 11. 10.	2023. 11. 13.	병가 1일	비대면 진단서(2023. 11. 13. 공보의 AT 발급), AY가 금요일(11. 10.)에 월요일(11. 13.) 병가를 미리 신청	
				2024. 2. 22.	2024. 2. 23.	병가 1일	비대면 진단서(2024. 2. 22. 공보의 AT 발급) ④보건지소 대진 시 발급)	
소계							8일 5시간 (30일)	

연 번	소속	공보의 명	병가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 (총 병가 일수)	위법 사유 등 특이사항 ^{주)}
			신청일	승인일	사용일		
5	곡성군	AU	2021. 3. 5.	2021. 3. 9.	2021. 3. 9.~ 2021. 3. 15.	병가 5일	라식 수술 확인서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안과)
			2021. 10. 21.	2022. 10. 22.	2021. 10. 22.	병가 1일	진단서 없음
			2021. 10. 29.		병가 4시간		
			2022. 4. 15.	2022. 4. 18.	2022. 4. 15.	병가 4시간	비대면 진단서(2022. 4. 15. 공보의 AX 발급)
			2022. 6. 28.			병가 4시간	비대면 진단서(2022. 6. 28. 공보의 AX 발급)
			2023. 1. 19.		2023. 1. 30.~ 2023. 1. 31.	공가 2일 중 1일	2023. 1. 31. 수련의 면접 없음
			2023. 2. 23.		2023. 2. 24.	병가 1일	비대면 진단서(2023. 2. 23. 공보의 AT 발급)
소계						9일 4시간 (27일 5시간)	
6	곡성군	BC	2021. 12. 17.			병가 1일	진단서 없음
소계						1일 (29일 7시간)	
7	곡성군	AI	2022. 6. 17.	2022. 6. 20.	2022. 6. 20.	병가 1일	출퇴근(월요일) 편의를 위해 병가(진단 서 없음)
			2022. 7. 1.	2022. 7. 4.	2022. 7. 1.	병가 1시간	출퇴근(금요일) 편의를 위해 병가(진단서 없음)
			2022. 7. 8.			병가 4시간	
			2022. 7. 18.			병가 4시간	출퇴근(월요일) 편의를 위해 병가(진단서 없음)
소계						2일 1시간 (29일 6시간)	
8	곡성군	-	2022. 1. 18.		2022. 1. 21.	병가 5시간 30분	진단서 없음
			2022. 2. 15.		2022. 2. 18.	병가 4시간	
			2023. 1. 9.		2023. 1. 10.	병가 1일 5시간	
			2023. 1. 3.		2023. 1. 16.	병가 1일	
			2023. 1. 20.		2023. 1. 27.	병가 1일	
소계						4일 6시간 30분 (23일 2시간 30분)	
9	곡성군	-	2023. 2. 9.			병가 4시간	진단서 없음
			2023. 3. 30.		2023. 3. 31.	병가 1일	진단서 없음
소계						1일 4시간 (27일)	
10	곡성군	-	2023. 3. 9.		2023. 3. 10.	병가 1일	진단서 없음
			2023. 3. 16.		2023. 3. 20.	공가 1일	학회 이수증 없음
소계						2일 (26일 5시간)	

연 번	소속	공보의 명	병가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 (총 병가 일수)	위법 사유 등 특이사항 ^{주)}
			신청일	승인일	사용일		
11	곡성군	-	2022. 3. 14.	2022. 3. 15.	2022. 3. 15.	병가 1일	진단서 없음
			2023. 2. 1.			병가 3시간	
	소계			1일 3시간 (25일)			
12	곡성군	-	2024. 3. 18.		2024. 3. 18.~ 2024. 3. 19.	병가 1일 4시간 30분	진단서 없음
	소계			1일 4시간 30분 (29일 7시간 30분)			
13	곡성군	-	2022. 3. 11.		병가 1일	진단서 없음	
			2023. 3. 21.	2023. 3. 22.	병가 5시간		
			2023. 3. 29.	2023. 3. 30.	병가 3시간		
	소계			2일 (19일 1시간)			
14	곡성군	-	2022. 3. 17.		병가 4시간	진단서 없음	
			2023. 3. 3.		병가 2시간		
			2023. 3. 6.		병가 1일		
	소계			1일 6시간 (23일 5시간 30분)			
15	곡성군	-	2021. 3. 24.		병가 2시간	진단서 없음	
			2021. 3. 26.		병가 2시간		
	소계			4시간 (14일 4시간)			
16	곡성군	-	2019. 5. 16.		병가 3시간	진단서 없음	
			2019. 6. 12.		병가 3시간		
			2019. 9. 9.		병가 1시간		
	소계			7시간 (13일 4시간)			
17	곡성군	-	2023. 1. 13.		병가 5시간	진단서 없음	
			2023. 3. 17.		병가 4시간		
	소계			1일 1시간 (21일 5시간)			
18	곡성군	-	2020. 12. 11.		병가 4시간	첨부 문서 확인 불가	
	소계			4시간 (25일 2시간)			
19	곡성군	-	2021. 4. 15.		병가 1일	첨부 문서 확인 불가	
	소계			1일 (13일 30분)			
20	곡성군	-	2020. 5. 12.		병가 4시간	진단서 없음	
	소계			4시간 (19일)			

주: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은 연차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중 진단서 등을 첨부하지 않거나 비대면 진단서 첨부 또는 병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병가를 사용한 시간만큼만 반영하여 산정함

자료: 곡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담양군 공보의의 위법한 병가 사용 현황

연 번	소속	공보의 명	병가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 (총 병가 일수)	위법 사유 등 특이사항 ^{주)}		
			신청일	승인일	사용일				
1	담양군	BA	2020. 1. 31.			병가 2시간	진단서 없음		
			2020. 2. 20.			병가 1일			
			2020. 3. 2.			병가 1일			
			2020. 3. 9.			병가 1일			
			2020. 3. 25.			병가 6시간			
소계						4일 (24일 1시간)			
2	담양군	-	2020. 2. 25.			병가 3시간	진단서 없음		
			2020. 2. 28.			병가 2시간			
			2020. 3. 10.			병가 3시간			
			2020. 3. 19.			병가 4시간			
			2020. 3. 25.			병가 2시간			
			2020. 3. 30.	2020. 3. 31.	2020. 3. 31.	병가 3시간			
			2020. 4. 2.			병가 3시간			
			2020. 4. 3.	2020. 4. 8.		병가 2일			
						2020. 4. 9.			
소계						4일 4시간 (18일)			
3	담양군	-	2020. 1. 8.			병가 1일	진단서 없음		
소계						1일 (29일 5시간)			
4	담양군	-	2021. 1. 21.	2021. 1. 21.	병가 2일	진단서 없음			
				2021. 1. 22.					
			2021. 3. 31.			병가 2시간			
소계						2일 2시간 (27일 6시간)			
5	담양군	-	2021. 4. 2.			병가 1일	진단서 없음		
소계						1일 (26일 4시간)			
6	담양군	-	2020. 1. 15.			병가 1일	진단서 없음		
			2020. 1. 31.			병가 4시간			
			2020. 3. 23.			병가 1일			
소계						2일 4시간 (15일 5시간)			

연 번	소속	공보의 명	병가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 (총 병가 일수)	위법 사유 등 특이사항 ^(주)
			신청일	승인일	사용일		
7	담양군	-	2022. 2. 7.	2022. 2. 7.	2022. 2. 8.	병가 2일	진단서 없음
소계			2일 (19일 2시간)				
8	담양군	-	2020. 1. 30.	병가 1시간			진단서 없음
			2020. 2. 14.	병가 2시간			
			2020. 2. 26.	병가 4시간			
			2020. 3. 16.	병가 1일			
			2020. 3. 20.	병가 1시간			
소계			2일 (16일 5시간 10분)				

주: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은 연차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중 진단서 등을 첨부하지 않거나 비대면 진단서 첨부 또는 병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병가를 사용한 시간만큼만 반영하여 산정함

자료: 담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4]

태안군 공보의 BI의 병가 사용 현황

연번	병가 사용 일시	병가 사용 시간	병가 사유
1	2019. 6. 5.	1시간	무릎 검진
2	2019. 6. 7.	1일	관절 검진
3	2019. 6. 17.	1일	관절 검진
4	2019. 6. 27.~2019. 7. 1.	3일	무릎 진료
5	2019. 10. 4.	3시간	무릎 통증
6	2019. 11. 22.	1시간 30분	무릎 통증
7	2019. 12. 23.~2019. 12. 24.	2일	무릎 통증
8	2019. 12. 31.	2시간 30분	무릎 통증
9	2020. 1. 2.~2020. 1. 3.	2일	무릎 통증
10	2020. 1. 17.	1일	무릎 재활
11	2020. 1. 23.	1일	무릎 재활
12	2020. 1. 31.	1일	무릎 재활
13	2020. 2. 6.	1일	무릎 통증
14	2020. 2. 7.	1일	무릎 재활
15	2020. 2. 14.	1일	무릎 재활
16	2020. 2. 21.	1일	무릎 재활
17	2020. 2. 24.~2020. 2. 27.	4일	무릎 수술 관련 진료
18	2020. 2. 28.	1일	무릎 재활
19	2020. 3. 2.~2020. 3. 11.	8일	무릎 치료
20	2020. 7. 2.	1일	무릎 진료
21	2020. 7. 24.	1일	무릎 진료
22	2020. 7. 30.	1일	무릎 진료
23	2020. 8. 25.	1일	무릎 진료
24	2020. 10. 22.	1일	무릎 치료
25	2020. 10. 26.	1일	무릎 치료
26	2020. 12. 22.	1일	무릎 진료
27	2021. 3. 11.	1일	무릎 진료
28	2021. 4. 12.	1일	무릎 진료
29	2021. 5. 13.	1일	무릎 진료
30	2021. 6. 24.	4시간	무릎 진료
31	2021. 9. 7.	1일	무릎 진료
32	2021. 9. 17.	1일	무릎 진료
33	2021. 10. 13.	1일	진료
34	2021. 11. 17.	1일	무릎 진료
35	2022. 1. 13.	1일	무릎 진료
36	2022. 1. 20.~2022. 2. 7.	10일	무릎 재활
합계		55일 4시간	-

자료: 태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5]

8일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공보의 현황

소속	연번	공보의명	의무 복무기간	위반 사유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 합계
곡성군	1	AT	2021. 4. 6. ~ 2024. 4. 27.	비대면 진단서 작성	11일 5시간	11일 5시간
	2	AV	2021. 3. 12. ~ 2024. 4. 2.	비대면 진단서 작성	8일 7시간	9일
				직무에 종사하지 않음	1시간 ¹⁾	
	3	AY	2021. 4. 12. ~ 2024. 4. 11.	비대면 진단서 작성	15일 1시간	8일 5시간 ²⁾
	4	AI	2021. 4. 12. ~ 2024. 4. 11.	진단서 미첨부	2일 1시간	365일 1시간
				직무에 종사하지 않음	363일	
	5	AK	2023. 4. 28. ~ 2026. 4. 27.	직무에 종사하지 않음	79일 5시간	79일 5시간
담양군	1	AL	2021. 4. 12. ~ 2024. 4. 11.	직무에 종사하지 않음	7일 5시간	8일 1시간 35분
					4시간 35분 ³⁾	
태안군	1	BI	2019. 4. 8. ~ 2022. 4. 7.	복무기간(병가) 30일 초과	25일 4시간	25일 4시간

주: 1. 2022. 6. 21. 1시간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처분 포함

2. 라섹 수술(6일 4시간)은 병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AY가 진단서를 첨부하였고, 곡성군에서 AY가 신청한 병가를 승인하였으므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에 미반영
3. 2021. 5. 26. 35분, 2022. 9. 7. 1시간 30분, 2023. 5. 8. 2시간 30분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처분 포함

자료: 곡성군, 담양군 및 태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6]

비대면 진단서 관련 곡성군 공보의의 주장과 검토결과

연번	발급일 (행사일) ¹⁾	보건지소명 (발급 공보의)	행사 공보의	최초 ²⁾ 출입자 (시간)	공보의의 주장 ³⁾	검토결과 ⁴⁾
1	2022. 1. 10.		AT	BK (08: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X는 09:00 전에 AT를 진료한 후 11:15에 접수하였다고 주장 · AT는 AX에게 09:00 전이나 11:15에 진료를 받았고 - 진료를 받을 때 보건지소 담당자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 환자로 방문한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최초 출입자는 AX가 아니고 BK로 시간이 맞지 않으며 - 보건지소 담당자는 AT를 환자로 본 적이 없다고 하며 - AX와 AT의 진료시간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른 사실 등으로 보아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	2022. 1. 24.	④보건지소 (AX)	AT	AZ (0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X는 09:00 전에 AT를 진료하였다고 주장 · AT는 AX에게 09:00 전이나 11:48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최초 출입자는 AX가 아니고 AZ로 시간이 맞지 않음 · 보건지소 담당자는 AT가 환자로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AX가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접수를 했으며 AT를 환자로 본 적은 없다고 진술 - AX와 AT의 진료시간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른 사실 등으로 보아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3	2022. 2. 21.		AT	AZ (0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X는 AT를 09:00 전에 진료하였다고 주장 · AT는 AX에게 09:00 전이나 11:52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최초 출입자는 AX가 아니고 AZ로 시간이 맞지 않음 · 보건지소 담당자는 AT가 환자로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AX가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접수를 했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4	2022. 3. 8. (2022. 3. 7.)		AV	AZ (0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X는 AV를 09:00 전, AT를 점심시간에 진료하였다고 주장 · AT는 AX에게 09:00 전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최초 출입자는 AX가 아니고 AZ로 시간이 맞지 않음 · 보건지소 담당자는 AT 및 AV가 환자로

연번	발급일 (행사일) ¹⁾	보건지소명 (발급 공보의)	행사 공보의	최초 ²⁾ 출입자 (시간)	공보의의 주장 ³⁾	검토결과 ⁴⁾
5	2022. 3. 8. (2022. 3. 7.)		AT	AZ (08:23)	<p>15:55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p> <p>- AV는 AX에게 점심시간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p>	<p>방문하지는 않았지만 AX가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접수를 했다고 함</p> <p>- AX가 진단서를 발급한 날은 PHIS에 진료기록이 없으며</p> <p>- AX, AT, AV의 진료시간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른 사실 등으로 보아 위 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p>
6	2022. 4. 13.		AV	AZ (08:27)	<p>AX는 AV를 09:00 전에 진료하였다고 주장</p> <p>- AV는 AX에게 점심시간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p>	<p>- 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최초 출입자는 AX가 아니고 AZ로 시간이 맞지 않음</p> <p>- 보건지소 담당자는 AV가 환자로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AX가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접수를 하였고</p> <p>- AX와 AV의 진료시간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른 사실 등으로 보아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p>
7	2022. 4. 15.	④보건지소 (AX)	AU	AZ (08:22)	<p>AX는 AU를 점심시간에 진료하였고</p> <p>- AU가 진료받은 사실에 대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p>	<p>AU는 ④보건지소를 방문하지 않고 진단서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p> <p>- 보건지소 담당자는 AU를 환자로 본 적이 없다고 하므로 AX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p>
8	2022. 6. 28.		AU	AZ (08:24)	<p>AX는 AU가 진료받은 사실에 대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p>	<p>AU는 ④보건지소를 방문하지 않고 진단서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p> <p>- 보건지소 담당자는 AU를 환자로 본 적이 없다고 하므로 AX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p>
9	2022. 11. 24.		AV	BK (08:55)	<p>AX와 AV는 09:00 전에 진료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p> <p>- 또한 AX는 서명 버튼을 깜빡하여 진단서에 관인이 없다고 주장</p>	<p>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최초 출입자는 AX가 아니고 BK로 시간이 맞지 않음</p> <p>- 보건지소 담당자는 AV를 환자로 본 적</p>

연번	발급일 (행사일) ¹⁾	보건지소명 (발급 공보의)	행사 공보의	최초 ²⁾ 출입자 (시간)	공보의의 주장 ³⁾	검토결과 ⁴⁾
9	2022. 11. 24.	④보건지소 (AX)	AV	BK (08:55)		<p>이 없다고 하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에 관인(서명)이 없는 등으로 보아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2021. 12. 2.		AV	BL (07: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와 AV는 09:00 전에 진료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 AV는 AT가 근무하는 ③지소와 본인이 근무하는 ⑤면보 건지소가 10분 거리로 가까워 09:00 전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최초 출입자는 AT가 아니고 BL로 시간이 맞지 않음 · 보건지소 담당자는 AV를 환자로 본 적이 없다고 하며 - AV는 2022. 4. 14.까지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였고 - 10분이 아니라 25분이 걸리므로 가까워서 09:00 전에 갔다는 진술 등은 믿기 어려워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	2021. 12. 10.	③보건지소 (AT)	AV	BL (08: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는 AV를 09:12에 진료하였다고 주장 · AV는 AT에게 09:00 전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최초 출입자는 AT가 아니고 BL로 시간이 맞지 않음 · 보건지소 담당자는 AV를 환자로 본 적이 없다고 하며 - 진료시간에 대한 AT와 AV의 진술이 서로 다른 등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3	2021. 12. 17.		AV	BM (0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는 AV를 09:00 전 또는 09:17에 진료하였다고 주장 · AV는 AT에게 09:00 전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최초 출입자는 AT가 아니고 BM임 · 보건지소 담당자는 AV를 환자로 본 적이 없다고 하며 - 진료시간에 대한 AT와 AV의 진술이 서로 다른 등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번	발급일 (행사일) ¹⁾	보건지소명 (발급 공보의)	행사 공보의	최초 ²⁾ 출입자 (시간)	공보의의 주장 ³⁾	검토결과 ⁴⁾
4	2022. 1. 14.		AX	BL (07: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AT는 AX를 09:00 전 또는 09:22에 진료하였다고 주장 ·AX는 자취방이 있는 전주에서 편히 쉬려고 09:00 전에 AT에게 진료를 받고 전주로 갔다고 주장 	<p>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최초 출입자는 AT가 아니고 BL로 시간이 맞지 않음</p> <p>보건지소 담당자는 AX를 환자로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p>
5	2022. 1. 20.		AV	BL (07: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AT는 AV를 09:00 전 또는 09:51에 진료하였다고 주장 ·AV는 AT에게 09:00 전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 	<p>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최초 출입자는 AT가 아니고 BL로 시간이 맞지 않음</p> <p>보건지소 담당자는 AX를 환자로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p>
6	2022. 1. 28.	③보건지소 (AT)	AX	BL (07: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AT는 AX를 09:00 전 또는 16:55에 진료하였다고 주장 ·AX는 점심시간에 AT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 	<p>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최초 출입자는 AT가 아니고 BL로 시간이 맞지 않음</p> <p>보건지소 담당자는 AX를 환자로 본 적이 없다고 하고</p> <p>- 진료시간에 대한 AT와 AX의 진술이 서로 다른 등으로 보아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p>
7	2022. 2. 25.		AY	BL (07: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AT는 AY를 09:00 8분에 진료하였다고 주장 ·AY는 일반환자가 방문하면 보건지소가 번잡할까봐 평소 AT에게 09:00 전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 	<p>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최초 출입자는 AT가 아니고 BL로 시간이 맞지 않음</p> <p>진료시간에 대한 AT와 AY의 진술이 서로 다른 등으로 보아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p>
8	2022. 7. 8.		AY	BM (08: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AT는 AY를 09:45에 진료하였고 - 진단서에 진단일이 다른 것은 AT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 ·AY는 평소 일반환자가 방문하면 보건지소가 번잡할까봐 AT에게 09:00 전에 진료를 	<p>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최초 출입자는 AT가 아니고 BM으로 시간이 맞지 않음</p> <p>진단서의 진단일(2022. 2. 25.)과 발급일이 다르고</p> <p>- 진료시간에 대한 AT와 AY의 진술이 서로 다른 등으로 보아 위 두 사람의</p>

연번	발급일 (행사일) ¹⁾	보건지소명 (발급 공보의)	행사 공보의	최초 ²⁾ 출입자 (시간)	공보의의 주장 ³⁾	검토결과 ⁴⁾
8	2022. 7. 8.		AY	BM (08:46)	<p>받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시간이 09:45인 것은 AT가 09:00 전에 진료 후 접수는 나중에 했을 것이라고 주장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9	2022. 7. 22.		AV	J (0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AT는 AV를 09:00 전이나 10:10에 진료하였다고 주장 ·AV는 AT에게 09:00 전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 	<p>·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최초 출입자는 AT가 아니고 J로 시간이 맞지 않음</p> <p>·보건지소 담당자는 AV를 환자로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등으로 보아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p>
10	2022. 8. 3. (2022. 8. 4. ~ 2022. 8. 5.)	③보건지소 (AT)	AY	J (0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AT는 AY를 13:57에 진료하였다고 주장 ·AY는 평소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진료를 받았으므로 점심시간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 	<p>·AT와 AY는 같은 ③지소에서 근무하여 보건지소 담당자가 실제 환자로 진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p> <p>·AY는 미리(수요일, 8. 3.) 진단서를 발부받아 목·금요일 병가를 사용하였고</p> <p>·진료시간에 대한 AT와 AY의 진술이 서로 다른 등으로 보아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p>
11	2022. 8. 23.		AV	BN (07: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AT는 AV를 09:00 전이나 09:20에 진료하였고 ·진단서에 진단일이 다른 것은 본인의 실수라고 주장 ·AV는 AT에게 09:00 전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 	<p>·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최초 출입자는 AT가 아니고 BN으로 시간이 맞지 않음</p> <p>·보건지소 담당자는 AV를 환자로 본 적이 없다고 하며</p> <p>·진단서에 진단일(2022. 7. 22.)과 발급일이 서로 다른 등으로 보아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p>
12	2022. 8. 30.		AV	J (08:42)	·AT는 AV를 09:00 전이나 14:31에 진료하였고	·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최초 출입자는 AT가 아니고 J로 시간이 맞지 않음

연번	발급일 (행사일) ¹⁾	보건지소명 (발급 공보의)	행사 공보의	최초 ²⁾ 출입자 (시간)	공보의의 주장 ³⁾	검토결과 ⁴⁾
12	2022. 8. 30.		AV	J (08: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에 진단일이 다른 것은 본인의 실수라고 주장 ·AV는 AT에게 점심시간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지소 담당자는 AV를 환자로 본 적이 없다고 함 ·담당자(BN)가 14:23, 14:27에 환자를 접수하는 등 보건지소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 AT가 담당자 몰래 4분 뒤인 14:31에 AV만을 접수하였고 - 진단서에 진단일(2022. 8. 23.)과 발급일이 서로 다르며 - AV와 AT의 진료시간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른 등으로 보아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3	2023. 1. 6.	③보건지소 (AT)	AV	CM (08: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AT는 AV를 09:00 전이나 15:50에 진료하였다고 주장 ·AV는 AT에게 09:00 전에 진료를 받았다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최초 출입자는 AT가 아니고 CM으로 시간이 맞지 않음 ·보건지소 담당자는 AV를 환자로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등으로 보아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4	2023. 2. 23.		AU	BN (0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AT는 AU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부하였다고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AU가 ③지소를 방문하여 진료받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
15	2023. 9. 15. (2023. 9. 18.)		AY	J (08: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AT는 AY를 09:00 전에 진료하였다고 주장 ·AY는 몸이 아파 AT에게 09:00 전에 진료를 받고 천안으로 출발 후 - 천안에서 결핵검사 후 교수님과 모임을 가졌다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보건지소 최초 출입자는 AT가 아니고 J로 시간이 맞지 않음 ·AT가 발급한 진단서에 발병일이 없고, PHIS에 진료기록도 없음 ·진단서를 발급한 날 AY는 공가(결핵)로 보건지소에 없었고 - 9. 15. 곡성에서 출발했다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 AT는 AY를 대신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날 병가를 상신하는 등으로 보아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번	발급일 (행사일) ¹⁾	보건지소명 (발급 공보의)	행사 공보의	최초 ²⁾ 출입자 (시간)	공보의의 주장 ³⁾	검토결과 ⁴⁾
16	2023. 11. 13.	③보건지소 (AT)	AY	BN (08: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는 AY를 09:00 전이나 09:16에 진료하였다고 주장 · AY는 AT에게 09:00 전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BN)가 09:16:25에 BO 환자를 접수하는 등 보건지소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AT가 담당자 몰래 8초 앞서 09:16:17에 AY를 접수하였고 AY는 진단서 발급일 전주 금요일(11. 10.)에 병가를 미리 상신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날(월요일)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7	2024. 2. 22.	④보건지소 (AT)	AY	BP4 (08: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는 ④보건지소로 출장 가기 전인 08:30에 ④지소에서 AY를 진료하였다고 주장 · AY는 AT에게 09:00 전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④지소 최초 출입자는 AT가 아니고 BP(08:45)로 시간이 맞지 않음 · AT는 PHIS에 진료기록을 진료했다는 ④지소가 아닌 ④보건지소에 입력한 사실 등으로 보아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2022. 3. 11.		AX	AI (07: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X는 점심시간에 AU와 대면하여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지소 담당자는 본인이 접수자가 된 이유 및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AU가 비대면 진단서 작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AX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	2022. 4. 6.	④지소 (AU)	AX	BQ (0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X는 점심시간에 AU와 대면하여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에 발병일 및 진단일이 없고 AU가 비대면 진단서 작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AX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3	2022. 4. 14.		AX	AI (08: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X는 점심시간 또는 퇴근 후에 AU와 대면하여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가 비대면 진단서 작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AX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번	발급일 (행사일) ¹⁾	보건지소명 (발급 공보의)	행사 공보의	최초 ²⁾ 출입자 (시간)	공보의의 주장 ³⁾	검토결과 ⁴⁾
4	2022. 8. 8.	④지소 (AU)	AX	BR (08:55)	· AX는 점심시간 또는 퇴근 후에 AU와 대면하여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	· 진단서에 발병일 및 진단일이 없고, PHIS에 진료기록도 없으며 - AU가 비대면 진단서 작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AX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2022. 5. 18.		AT	AJ (07:59)	· AT와 AV는 09:00 전에 진료를 했다고 주장	· 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⑤면보건지소 최초 출입자는 AV가 아니고 AJ로 시간이 맞지 않음 · 보건지소 담당자는 환자로서 AT를 본적이 없으며 진단서 발부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등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	2022. 8. 31.	⑤면보건지소 (AV)	AT	AJ (07:56)	· AT와 AV는 09:00 전에 진료를 했다고 주장 · AV와 AT의 진료기록을 PHIS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깜빡한 채 - 진단서 발부 버튼을 눌러 진단일이 다르다고 주장	· 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⑤면보건지소 최초 출입자는 AV가 아니고 AJ로 시간이 맞지 않음 · 보건지소 담당자는 환자로서 AT를 본적이 없고 진단서 발부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 진단서의 진단일(2022. 5. 18.)과 발급일이 서로 다르고, PHIS에 진료기록도 없는 등으로 보아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3	2023. 7. 24.		AT	AJ (07:39)	· AT는 허리가 아파 7. 19.(수요일)에 다음 주 병가(7. 24.~25., 월·화요일)를 미리 상신하고 - 광주에 있는 형집에서 쉬다가 7. 24. 일부러 곡성에 내려가 진료를 받고 광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 · AV는 AT를 09:00 전에 진료하였고, PHIS에 등록하는 것을 깜빡했으며	· 보건지소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인 09:00 전에 진료를 하였다고 하나 ⑤면보건지소 최초 출입자는 AV가 아니고 AJ로 시간이 맞지 않음 · 보건지소 담당자는 환자로서 AT를 본적이 없으며 진단서 발부 사실을 모르고 있음 · 진단서에 발병일이 없고, PHIS에 진료기록도 없으며, 진단서의 병명은 급성 코인두염(감기)이나 증상은 허리와 관련이 없는 급성 장염이고

연번	발급일 (행사일) ¹⁾	보건지소명 (발급 공보의)	행사 공보의	최초 ²⁾ 출입자 (시간)	공보의의 주장 ³⁾	검토결과 ⁴⁾
3	2023. 7. 24.	㊂면보건지소 (AV)	AT	AJ (07:39)	- 감기와 장염은 동반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	- 5일 뒤에 아플 거라고 미리 예상하여 병가를 상신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위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2023. 3. 20.	㊂지소 (AW)	AT	- (07:23)	AT 및 AW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	-

주: 1. 진단서 행사일은 발급일과 다른 경우에만 기재함

2. 보건지소 담당자와 공보의는 개인별로 고유한 출입카드를 가지고 있어 최초로 문을 연 경우 기록이 남아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만약 공보의가 보건지소 담당자들보다 먼저 출근하여 서로 간에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해당 보건지소 최초 출입자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기록이 없어 09:00 전에 보건지소로 출근하여 진료행위를 했다는 공보의들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움
3. 공보의들은 서로 간의 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09:00 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진료행위를 했었고, 09:00 전에 접수를 했다는 소문이 나면 다른 일반 환자들도 09:00 전에 접수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보건지소 담당자들에게 출근 전부터 업무가 과중해질 것을 우려해 09:00 전에 진료 후 업무시간에 PHIS에 등록 및 접수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건지소 담당자들이 공보의들을 해당 보건지소에서 환자로 본 적이 없다고 확인한 부분에 대한 변명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4. BP는 ④보건지소 최초 출입자이며, ④보건지소에서 AY를 환자로 본적이 없고, AT가 약을 달라고 해서 약을 줬다고 진술함

자료: 곡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감사원

징계·주의요구

제 목 위법한 균평 및 승진대상자로 사전 내정

소 관 기 관 곡성군

조 치 기 관 곡성군

내 용

1. 사건 개요

곡성군은 2022. 5. 31.¹⁾ 기준으로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해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2022. 6. 30.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후 2022. 7.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행정주사 3명과 지방의료기술사무관 1명을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한 다음 각각 2022. 7. 11.과 2022. 9. 17. 승진임용하였다.

2. 위법한 근무성적평정을 통해 부당 승진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과 「곡성군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따르면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근무성적평정 시 1점을 감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 제5항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

1) 곡성군은 전년 12. 1.부터 당해연도 5. 31.까지를 당해연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기간으로, 당해연도 6. 1.부터 11. 30.까지를 당해연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평정일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기 평정은 6. 30.과 12. 31.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에 따르면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 점을 합산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은 6급·7급 공무원의 경우 최근 2년 이상을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곡성군은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는 1점을 감점하여야 하고, 승진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아 근무성적 평정 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곡성군은 2014. 7. 24. 음주운전을 하고도 광주남부경찰서 조사 시 공무원 신분을 속여²⁾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지방행정서기 BS를 2015. 1. 1.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임용하였다가, 2019. 8. 28. 다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이 적발되자³⁾ 2020. 3. 9. 지방행정서기로 강등임용하였고, 강등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⁴⁾(2020. 9. 28.~2022. 3. 27.)이 끝난 직후인 2022. 4. 1. 지방행정주사보로 근속 승진임용⁵⁾하였다.

2) BS는 2014. 7. 24. 혈중 알코올 농도 0.163%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광주남부경찰서에서 2014. 7. 26.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학교를 중퇴하여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는 하층민이라고 하는 등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무직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곡성군은 경찰청으로부터 BS의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채 2015. 1. 1.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을 시킴

3) 곡성군은 2019. 9. 30. 광주동부경찰서로부터 BS의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고도 2019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99.4점(탁월)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였고, 2019. 12. 27.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BS에 대해 조치 결과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받은 후 2019. 12. 30. 전라남도에 BS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함

4) 강등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8개월임. BS의 경우 강등에 따른 정직기간(2020. 3. 9.~6. 8.)이 끝나자마자 육아휴직(2020. 6. 9.~9. 27.) 후 2020. 9. 28. 복직함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18개월)은 2020. 9. 28.부터 2022. 3. 27.까지임

그런데 곡성군(과)은 음주운전으로 강등과 이에 따른 3개월의 정직⁶⁾(2020. 3. 9.~6. 8.) 처분을 받고, 2020. 6. 9.부터 2020. 9. 27.까지 육아휴직을 한 BS를 202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을 하지 않은 채 곡성군 전체 지방행정 주사보 근무성적평정 순위 1위를 주었다.⁷⁾⁸⁾

그리고 곡성군(과)은 BS의 경우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기준일(2022. 5. 31.)에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임용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아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대상자가 아닌데도 2022. 5. 18.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명단에 BS를 포함하였다.

그 결과 곡성군은 2022. 6. 3. BS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을 한 후 2022년도 상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⁹⁾에 활용함에 따라 [별표] “2022년 상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재작성 결과”와 같이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않았다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24위가 되어 승진예정인원(3명)의 4배수인 12위에 들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2년 이상 7급으로 근무하여야 하고,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6) 「지방공무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7) 정당하게 1점을 감점하였다면 BS의 202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순위는 곡성군 회실에서 1위가 아닌 2위가 되고, 1위 BT(전체 6위)를 넘어서 수 없으므로 곡성군 전체 지방행정주사보 순위는 최대 6위까지만 가능함

8) BS는 2020년 상반기 근무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202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1점을 감점하여야 함

9) 「2022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에 동일직급에서의 평정점수가 없을 때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만점의 60%로 하도록 되어 있고,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수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평점수로 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BS는 2020. 3. 9. 8급으로 강등된 후 2022. 4. 1. 7급으로 근속 승진임용되어 2020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7급에서의 평정점수가 없지만 강등되기 이전인 2019년 하반기 7급에서의 평정점(68.8)이 있어 68.8점을 2020년 하반기 평정점으로 끌어와 반영하고, 2021년 이후의 경우 7급에서의 평정점이 없어 2022년 상반기 평정점은 70점 만점의 60%인 42점이 되는 등 6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될 BS의 근무성적평정점은 평균 점수인 55.4점이 되고, 80점으로 환산할 경우 63.31점이 됨. 그러나 곡성군은 BS를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대상자에 포함하여 2022년 상반기 평정점을 67.6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BS의 근무성적평정점을 77.6점(80점 환산)으로 하여 6급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함

작성 구분	80점(만점) 환산	평정결과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부당	77.6점	67.9점	68.8점	67.6점	67.6점	67.6점
정당	63.31점	55.4점	68.8점	42점	68.8점	42점

않아 인사위원회의 승진 사전심의 대상도 될 수 없는 BS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2위가 되어 “3항 나”와 같이 승진임용되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더 높은 다른 공무원은 승진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3. 군수가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승진대상자를 사전 내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따르면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¹⁰⁾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¹¹⁾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한 것은 임용권자가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곡성군수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기 전에 본인이 내정한 직원들을 인사위원회에 승진대상자로 추천하는 등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0) 임용하려는 결원 수가 1명이면 결원 1명당 7배수, 2명이면 결원 1명당 5배수, 3명 이상 5명 이하면 결원 1명당 4배수를 하도록 되어 있음

1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에 따르면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보, 파견, 해임, 파면 등이 포함됨

그런데 곡성군수는 2022. 7. 8. 지방행정주사 3명과 지방의료기술사무관 1명의 승진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인 2022년 7월경(날짜 모름) 지방행정주사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1순위 BU, 2순위 BS, 4순위 BV를, 지방의료기술사무관의 경우 2순위 A를 승진대상자로 사전 내정하였다.

그 결과 2022. 7. 8. 곡성군 인사위원회 인사위원¹²⁾으로 참석한 □과장은 곡성군수가 내정한 위 4명을 승진대상자로 추천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위 4명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게 되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다.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곡성군 ○⑧면 BW¹³⁾는 2018. 7. 20.부터 2023. 1. 12.까지 □과 □팀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등 □팀 업무를 담당하였다.

BW는 □팀에 근무하면서 5번에 걸쳐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담당하여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¹⁴⁾

그런데 BW는 □과에서 같이 근무했던 BS가 음주운전으로 2020. 3. 9. 지방행정주사보에서 지방행정서기로 강등되자 BS의 승진임용 제한기간(18개월) 종료일 다음 날(2022. 3. 28.)에 BS를 지방행정주사보 근속승진 대상자로 올려 2022. 4. 1.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임용되게 하였다.

12) 곡성군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제3항과 다르게 □과장을 인사위원회 임명직 위원으로 하지 않고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인사위원 중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임명하지 않고 3명을 임명하였으며, BX(□과장)를 여성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전체 8명의 인사위원 중 6명을 곡성군 전·현직 공무원으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함

13) BW는 □과에서 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 1. 8.부터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BS하고는 2018. 7. 20.부터 2019. 7. 31.까지 같은 □과에서 근무하여 친분이 있었다고 진술함

14) BW는 2022. 5. 18.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한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계획 알림(2022. 5. 31. 기준) 문서를 기안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음

그리고 나서 BW는 BS의 경우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기준일(2022. 5. 31.)에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임용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아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2022. 5. 18. BS를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대상자에 포함한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계획 알림(2022. 5. 31. 기준) 문서를 기안하여 □과장 AH의 결재를 받아 BS의 소속부서인 □과 등에 발송함에 따라 [별표] “2022년 상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재작성 결과”와 같이 BS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2위가 되었다.

그리고 BW는 2022. 7. 8. 개최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하면서 BS가 음주운전으로 2020. 3. 9. 지방행정주사보에서 지방행정서기로 강등임용된 후 2022. 4. 1. 지방행정주사보로 근속 승진임용된 사실은 제외한 채 2015. 1. 1.부터 지방행정주사보로 7년 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심의자료를 작성¹⁵⁾하여 인사위원들에게 제출하였다.¹⁶⁾

그 결과 인사위원회의 승진 사전심의 대상도 될 수 없는 BS가 지방행정주사보로 근속 승진임용된 지 3개월여 만에 지방행정주사로 승진임용¹⁷⁾되는 등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떨어뜨렸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
- 15) BW는 BS의 음주운전과 징계 전력에 대해 인사위원회 부의안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기억나지 않고, 인사위원들이 알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함
- 16) AH는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 참석하여 3위 BY의 지방행정주사보 재직경력이 5년(4년 11개월)이 안 되니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함
- 17) BW는 2022. 4. 1.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한 BS가 3개월 만에 또 승진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BS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경우 빠르면 1년 반, 늦으면 2년 이상이 지나야 승진이 가능하다고 진술함

곡성군은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성적평정 기간 산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승진심사 시 범죄 경력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인사위원회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BW는 근무성적평정 대상기준일이 5. 31.이므로 BS가 승진한 지 두 달이 지났다고 잘못 생각하여 BS를 근무성적평정 대상자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W는 ~~사팀~~ 담당자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5회에 걸쳐 하였고, 2022. 5. 18.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 평정 일에 평정한다는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계획을 직접 작성하였다.

그리고 BW는 BS가 음주운전으로 2020. 3. 9. 지방행정주사보에서 지방행정서기로 강등임용된 후 2022. 4. 1. 지방행정주사보로 근속 승진임용된 사실은 제외한 채 2015. 1. 1.부터 7년 6개월간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¹⁸⁾하여 인사위원들에게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W는 BS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BW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요구 양정 근무성적평정 대상자가 아닌데도 근무성적평정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실과 다르게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하는 등으로 특정인을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한 BW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등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8) BW는 BS의 음주운전과 징계 전력에 대해 인사위원회 부의안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기억나지 않고, 인사 위원들이 이를 알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함

그리고 BW의 부당한 행위로 인사위원회의 승진 사전심의 대상도 될 수 없는 BS가 지방행정주사로 승진임용된 반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높은 다른 공무원은 승진임용되지 못하게 되는 등¹⁹⁾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지방 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곡성군수는

- ① 근무성적평정 대상자가 아닌데도 근무성적평정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실과 다르게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하는 등으로 특정인을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승진대상자로 사전심의하고 군수가 승진임용하도록 한 BW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정직)하고(징계)
- ② 앞으로 근무성적평정 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감점을 하지 않거나 근무성적평정 대상자가 아닌데도 근무성적평정 대상자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 ③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특정인을 승진대상자로 사전에 선정하거나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9) 정당한 평가를 했다면 BS가 24위가 되고, BY가 2위가 되어 곡성군수의 인사원칙대로면 BY가 승진했을 텐데도 BW는 자신의 부당한 행위로 승진하지 못한 BY에게 왜 미안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함

[별표]

2022년 상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재작성 결과

성명	부당 승진후보자 명부					정당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 여부
	근무성적 평점점	경력 평점점	가산점	합계	순위	근무성적 평점점	경력 평점점	가산점	합계	순위	
BU	77.8	20	0.08	97.88	1	77.8	20	0.08	97.88	1	○
BS	77.6	20	0.03	97.63	2	63.31	20	0.03	83.34	24	○
BY	75.89	20	-	95.89	3	75.89	20	-	95.89	2	×
BV	75.37	20	0.25	95.62	4	75.37	20	0.25	95.62	3	○
-	74.8	20	0.25	95.05	5	74.8	20	0.25	95.05	4	×
-	74.89	20	0.05	94.94	6	74.89	20	0.05	94.94	5	×
-	73.11	20	-	93.11	7	73.11	20	-	93.11	6	×
-	72.89	20	0.13	93.02	8	72.89	20	0.13	93.02	7	×
-	72.34	20	0.08	92.42	9	72.34	20	0.08	92.42	8	×
-	71.71	20	-	91.71	10	71.71	20	-	91.71	9	×
-	71.63	20	0.03	91.66	11	71.63	20	0.03	91.66	10	×
-	70.97	20	0.15	91.12	12	70.97	20	0.15	91.12	11	×
-	72.34	18.33	0.08	90.75	13	72.34	18.33	0.08	90.75	12	×
-	70.34	20	-	90.34	14	70.34	20	-	90.34	13	×
-	69.8	20	0.03	89.83	15	69.8	20	0.03	89.83	14	×
-	69.06	20	0.05	89.11	16	69.06	20	0.05	89.11	15	×
-	69.09	20	-	89.09	17	69.09	20	-	89.09	16	×
-	68.37	20	0.3	88.67	18	68.37	20	0.3	88.67	17	×
-	67.63	20	0.3	87.93	19	67.63	20	0.3	87.93	18	×
-	66.6	20	0.25	86.85	20	66.6	20	0.25	86.85	19	×
-	65.66	20	0.03	85.69	21	65.66	20	0.03	85.69	20	×
-	64.57	20	0.05	84.62	22	64.57	20	0.05	84.62	21	×
-	64.54	20	-	84.54	23	64.54	20	-	84.54	22	×
-	63.77	20	-	83.77	24	63.77	20	-	83.77	23	×

자료: 곡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감사원

징계·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포상 추천제한자를 표창 대상자로 부당 추천

소 관 기관 ① 담양군 ② 농촌진흥청

조 치 기관 ① 담양군 ② 농촌진흥청

내 용

1. 사건 개요

담양군(농업기술센터)은 포상 추천제한자인 농업기술센터 소속 BZ를 2020년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이하 “군수 표창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0. 12. 4. 군정발전 유공자로 추천하여 담양군수 표창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농촌진흥청(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2021년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포상계획(이하 “청장 표창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1. 10. 21. 담양군이 BZ를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유공자로 추천하자 2021. 12. 6. BZ를 농업진흥청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한 후 표창을 수여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담양군의 군수 표창 계획과 농촌진흥청의 청장 표창 계획에 따르면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 등을 야기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담양군의 군수 표창 계획과 농촌진흥청의 청장 표창 계획에서 준용

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Ⅲ. 3. 공무원 포상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등은 포상 추천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 V. 7. 정부포상 취소에 따르면 포상을 받은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¹⁾ 포상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담양군의 군수 표창 계획에 따르면 각 부서는 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외대상 여부를 필히 확인한 후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농촌 진흥청의 청장 표창 계획에 따르면 추천기관은 표창 후보자 추천 시 자체 공적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공적확인 등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담양군이 2021. 1. 28. 각 부서에 공지한 2021년도 담양군 포상 운영 계획에 따르면 외부기관 표창 대상자 추천 시 대상자의 징계 이력 등을 확인한 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담양군은 BZ가 2020. 10. 19. 전남담양경찰서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²⁾ 혐의로 수사 개시된 사실과, 2021. 5. 1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³⁾(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및 2021. 5. 27. 담양군 인사위원회로부터 성실의무 위반으로 불문경고(상훈감경)⁴⁾받은 사실을 각각 통보받았다.

1)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된 이후 수여받기 전까지 감사 조사, 수사, 형사 사건으로 기소, 징계의 추천제한요건이 발생하면 추천기관에 즉시 알려야 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로 보아 표창 등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

2) BZ는 2020. 8. 30. 트랙터의 접이식 안전프레임을 분리한 채로 농민 CA에게 트랙터를 임대함에 따라 CA가 2020. 8. 31. 트랙터 전복 사고로 질식사함

3) 2심 항소기각(2022. 6. 14.) 및 3심 상고기각(2022. 9. 16.)됨

4) 담양군은 2021. 1. 8.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BZ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2021. 2. 5. 담양군인사위원회에 BZ를 징계요구(경징계)하였으나 담양군 인사위원회에서 2021. 3. 9. 1심 판결 시까지 의결을 보류하였으며, 2021. 5. 12. BZ의 1심 판결이 나오자 담양군 인사위원회는 2021. 5. 27. BZ가 이전에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심의·의결함

따라서 담양군은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BZ를 군정발전 유공자로 추천하거나 농촌진흥청에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유공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담양군은 2020. 10. 19. 전남담양경찰서로부터 BZ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개시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2020. 12. 4. BZ를 군정발전 유공자로 추천하였다.⁵⁾

그리고 담양군은 BZ가 2021. 5. 1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과 2021. 5. 27. 담양군 인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를 받았는데도 2021. 10. 21. 농촌진흥청에 BZ를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유공자로 추천하였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BZ가 2021. 5. 1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과 2021. 5. 27. 담양군 인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을 모른 채 2021. 12. 6. 담양군이 추천한 BZ를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유공자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BZ는 포상 추천제한자임에도 담양군수 표창(부상 담양사랑상품권 10만 원)과 농촌진흥청장 표창(시상금 30만 원)을 받게 되었다.

4.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담양군 ~~▣~~과 CB는 2020. 7. 8.부터 2022. 12. 31.까지 농업기술센터 ~~▣~~과장으로,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CC는 2020. 7. 8.부터 2022. 12. 31.까지 ~~▣~~과장으로, 담양군 미래농업연구단 CD는 2020. 7. 8.부터 2022. 12. 31.까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담양군 공공시설사업소 ~~▣~~팀장 BZ는 2020. 1. 10.부터 2021. 12. 31.까지 농업기술센터 ~~▣~~과 농기계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각각 농촌진흥청

5) 담양군은 2020. 12. 23. BZ를 군정발전 유공자로 선정함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유공자 추천 업무 등을 처리하거나 총괄하였다.

가. CB의 경우

CB는 2020. 10. 20. 공무원범죄(업무상과실치사) 수사에 따른 변호사 선임 계획을 검토·결재하여 BZ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남담양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2021. 5. 20. 관외출장결과보고서(형사소송 관련)를 검토·결재하여 BZ의 1심 판결 및 이에 대한 항소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1년 5월경(날짜 모름) 담양군 인사위원회에서 BZ에게 불문경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CB는 2021. 10. 12. 농촌진흥청에서 보내온 청장 표창 계획을 검토하는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중⁶⁾이고 불문경고를 받은 BZ는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CB는 2021년 10월경(날짜 모름) CD와 CC가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BZ가 고생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BZ를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유공자로 추천하는 것을 CD, CC와 함께 결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CB는 BZ로 하여금 청장표창 추천자 현황과 현지조사확인서 등 추천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에 BZ는 청장표창 추천자 현황을 작성하면서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과 수사 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으며, 현지조사확인서 또한 과거 형벌 및 징계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그런데 CB는 BZ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청장표창 추천자 현황과 현지조사확인서가 사실인 것으로 각각 확인 도장을 찍었다.

6) 행정안전부에서는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더라도 2심 및 3심이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로 보아야 한다는 답변임

또한 CB는 2021. 1. 28.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2021년도 담양군 포상 운영 계획과 다르게 2021. 10. 20. CD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의의 공적심사위원회에 CC와 같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BZ를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유공자로 심의·의결하였다.

이후 CB는 2021. 10. 20. ~~뒤~~과 CE가 BZ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첨부하여 2021년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유공자 추천 심의결과 문서를 기안하고 지원기획담당 CF의 중간 결재를 받아 상신하자 이를 검토 및 중간 결재한 후 CD에게 최종 결재를 올리도록 하였다.⁷⁾

그 결과 BZ는 포상 추천제한자임에도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받게 되었다.⁸⁾

나. CC의 경우

CC는 BZ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남담양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2021년 5월경(날짜 모름) 담양군 인사위원회에서 BZ에게 불문경고한 사실을 CB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그리고 CC는 포상 추천 업무를 여러 차례 처리한 사실이 있어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은 포상 추천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1심 판결에 따라 불문경고를 받은 BZ는 표창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CC는 2021년 10월경(날짜 모름) CB와 CD가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BZ가 고생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BZ를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7) BZ는 2021. 10. 20. 심의결과 내부결재 공문과 본인의 추천서류를 스캔하여 2021. 10. 21.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담당자는 BZ의 추천서류 등을 농촌진흥청에 제출함

8) CB는 담양군수 표창 추천 과정에도 관여한 사실이 있으나 징계시효가 경과함

유공자로 추천하는 것을 CB, CD와 함께 결정하였다.

또한 CC는 2021. 1. 28.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2021년도 담양군 포상 운영 계획과 다르게 2021. 10. 20. CD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의의 공적심사위원회에 CB와 같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BZ를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유공자로 심의·의결하였다.

그 결과 BZ는 포상 추천제한자임에도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받게 되었다.⁹⁾

다. CD의 경우

CD는 2020. 10. 20. 공무원범죄(업무상과실치사) 수사에 따른 변호사 선임 계획을 검토·결재하여 BZ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남담양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2021. 5. 20. 관외출장결과보고서(형사소송 관련)를 검토·결재하여 BZ의 1심 판결과 이에 대한 항소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1년 5월 또는 6월경(날짜 모름) 담양군 인사위원회에서 BZ에게 불문경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CD는 포상 추천업무를 여러 차례 처리한 사실이 있어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기소 중에 있거나 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은 포상 추천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CD는 2021. 10. 12. 농촌진흥청에서 보내온 청장 표창 계획을 검토하는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중이고 불문경고를 받은 BZ는 농촌진흥청 농업 기계안전교육사업 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¹⁰⁾

그런데 CD는 2021년 10월경(날짜 모름) CB와 CC가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9) CC는 담양군수 표창 추천 과정에도 관여한 사실이 있으나 징계시효가 경과함

10) CC는 공적심사 당시 CD가 BZ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민·형사재판이 계류 중이고,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아 표창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CD는 청장 표창 계획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추천대상에서 제외라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포상추천 제외 사유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BZ가 고생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BZ를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유공자로 추천하는 것을 CB, CC와 함께 결정하였다.

그러고 나서 CD는 2021. 1. 28.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2021년도 담양군 포상 운영 계획과 다르게 2021. 10. 20. 본인이 위원장인 임의의 공적심사위원회에 CB, CC와 같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BZ를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유공자로 심의·의결하였다.

이후 CD는 2021. 10. 20. CE가 BZ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첨부하여 2021년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유공자 추천 심의결과 문서를 기안하고 CF와 CB의 중간 결재를 받아 상신하자 이를 검토 및 최종 결재하였다.

그 결과 BZ는 포상 추천제한자임에도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받게 되었다.¹¹⁾

라. BZ의 경우

BZ는 2020년 10월경(날짜 모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남담양경찰서에서 본인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여 본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2021. 5. 12. 1심 판결 후 2021. 5. 17. 항소를 하였으며, 2021. 5. 27. 1심 판결에 따라 담양군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를 받았다.

그런데 BZ는 CD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안전교육 사업 유공자로 추천받은 후 청장표창 추천자 현황과 현지조사확인서 등 추천서류를 작성하면서 청장표창 추천자 현황의 경우 본인이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과 수사 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그리고 BZ는 현지조사확인서도 과거 형벌 및 징계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실과

11) CD는 담양군수 표창 추천 과정에도 관여한 사실이 있으나 징계시효가 경과함

다르게 작성한 후 2021. 10. 21. 농촌진흥청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청장표창 추천자 현황과 현지조사확인서 등¹²⁾ 추천서류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BZ는 포상 추천제한자임에도 2021. 12. 6. 농업진흥청장 표창을 받게 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① 관계기관 의견

담양군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전 직원이 포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포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농촌진흥청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 BZ에게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② 관련자 의견

CB, CC와 CD는 BZ를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것은 기준을 위반하여 잘못된 업무 처리였고, 포상업무를 다시 처리한다면 BZ를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BZ는 본인의 표창 대상자 추천은 기준에 어긋나게 처리되었고, 추천 서류 작성을 다시 한다면 본인은 표창 대상자 추천제한에 해당하여 추천서류를 작성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포상 제한자를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CB, CC와 CD 및

12) BZ는 공적조서도 농업인 생명보호에 기여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함

추천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BZ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담양군수는

- ① 포상 제한자를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고 추천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CB, CC, CD, BZ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징계)
- ② 앞으로 포상 제한자를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포상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주의)
- ③ 포상 제한자인 BZ에게 수여한 군수 표창을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에 따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농촌진흥청장은 포상 제한자인 BZ에게 수여한 청장 표창을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에 따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사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공무원 병가 중 국외여행 등

소 관 기 관 ① 곡성군 ② 담양군

조 치 기 관 ① 곡성군 ② 담양군

내 용

1. 업무 개요

곡성군은 소속 공무원들의 연가, 병가 등 휴가제도에 관한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고, 곡성군과 담양군은 공무직 근로자¹⁾가 음주운전 등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각각 「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과 「담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2. 병가 중 국외여행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 제1항과 제25조의2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는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이 건 점검 대상에서 제외함

따라서 곡성군은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병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병가를 허가받은 공무원은 병가기간 중 병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치료에 전념²⁾하여야 하며, 병가 취소 없이 국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다른 목적으로 병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곡성군은 ⑤면 CG가 유통을 이유로 2023. 7. 27.부터 2023. 8. 23.까지 4주간 병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병가 취소 없이 2023. 8. 11. 팜으로 출국하여 2023. 9. 30.³⁾ 귀국하였는데도 그대로 두었다.

그 결과 CG는 병가기간과 국외여행이 겹치는 8일만큼 연가일수를 더 인정 받게 되었다.

3. 공무직 근로자 음주운전 관리방안 마련 필요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42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담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51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으나 공무직 근로자는 소속기관의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하는 목적이 근로자가 병가 기간 중 치료에 전념하여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할 것이므로 병가 기간 중 해외 여행을 한 것으로 상병이 악화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동 기간 치료에 전념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상병 치료가 늦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해외여행 기간이 병가 기간에 비하여 짧다고 하더라도 병가부여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봄(사건번호 2005부해653, 2005. 8. 31.)

3) CG는 병가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인 2023. 8. 24. 출산휴가를 신청함(CG는 팜에서 2023. 9. 16. 출산함)

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곡성군과 담양군은 공무직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자체 점검을 하지 않는 이상 공무직 근로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2020. 9. 1.부터 운전업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연 1회 제출하게 하고, 모든 공무직 근로자는 상·하반기 각 1회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제시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부서장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거제시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 규칙」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곡성군과 담양군은 공무직 근로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점검하거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곡성군과 담양군은 공무직 근로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점검하거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4. 4. 1.~5. 21.) 중 2019. 1. 1.부터 2024. 3. 29.까지 곡성군과 담양군 공무직 근로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곡성군 공무직 근로자 CH 등 5명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는데도 곡성군과 담양군은 2024년 4월 현재까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표] 공무직 근로자 음주운전 적발 현황

기관	성명	부서	적발일	혈중 알코올농도(%)	행정처분 종류 (처분 기간)	비고
곡성군	CH	-	2019. 7. 24.	0.105	면허취소 (2019. 9. 11.)	징계시효 도과
곡성군	-	급과	2023. 10. 15.	0.192	면허취소 (2023. 12. 25.)	
담양군	-	-	2020. 1. 28.	0.048	면허정지 (2020. 2. 1.~2020. 3. 21.)	
담양군	-	-	2021. 1. 11.	0.040	면허정지 (2021. 2. 23.~2021. 6. 2.)	
담양군	-	-	2022. 6. 1.	0.089	면허취소 (2022. 8. 21.)	

주: 곡성군 공무직 근로자의 징계시효는 2년이고, 담양군 공무직 근로자는 징계시효 규정이 없음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곡성군은 앞으로 직원이 병가기간 중 국외여행을 가는 일이 없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거나 정기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병가 중 국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담양군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곡성군수는

① 앞으로 소속 공무원이 병가를 이용하여 국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병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 ⑤면 CG(현 카파)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거나 정기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담양군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거나 정기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사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기부채납 대상 시설 미설치 등

소 관 기관 담양군

조 치 기 관 담양군

내 용

1. 업무 개요

담양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7. 8. 1. 유한회사 [나[차]] 등 29명(이하 “시행자”라 한다)을 담양읍 일원에 대한 군계획시설사업(유원지)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¹⁾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2017. 9. 28.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등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담양군과 시행자가 2017. 10. 25. 체결한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시설물 기부채납 및 운영 확약서²⁾(이하 “기부채납 확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시행자는 [표]와 같이 생태주차장3 등 10개 시설을 담양군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고, 생태주차장3, 4는 준공 후, 복합 전시카페 및 복합 공연장1, 2 등 8개 시설은 준공 후 20년 뒤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다.

1) 사업기간 2017. 9. 28.~2026. 12. 31., 총사업비 678억여 원, 면적 153,235.2㎡임

2) 3차례(2020. 5. 7., 2021. 4. 22., 2023. 4. 17.)에 걸쳐 기부채납 확약서를 변경함

[표] 기부채납 대상 시설 현황

(단위: m²)

연번	시설명	위치	기부채납 면적	기부채납 시점	준공 여부
1	생태주차장3	-	8,036	준공 후	미준공
2	생태주차장4	-	1,686	준공 후	미준공
3	컨벤션 센터	-	337	준공 후 20년	준공
4	다목적홀	-	495	준공 후 20년	미준공
5	광장	-	595	준공 후 20년	미준공
6	메타플레이랜드	-	960	준공 후 20년	미준공
7	복합 전시카페 및 복합 공연장1	-	780	준공 후 20년	준공
8	복합 전시카페 및 복합 공연장2	-	401	준공 후 20년	준공
9	북카페 및 키즈랜드	-	250	준공 후 20년	미준공
10	청년창업예술공방 전시체험장	-	464	준공 후 20년	준공

주: 기부채납 대상 시설에서 도로는 제외함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2. 기부채납 대상 시설 미설치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기부채납 대상 시설 중 생태주차장은 메타프로방스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이고, 광장은 2017. 9. 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성 강화 의견³⁾에 따라 기부채납 대상에 추가된 시설이므로 당초 사업기한인 2018. 12. 31.에 맞춰 준공될 필요가 있고, 담양군이 2017. 9. 28. 인가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에도 생태주차장과 광장은 주요 영리 시설 준공시기와 같이 2018. 12. 31.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르면 군수는 시행자가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가 취소 및 공사 중지 등의

3) 담양군은 2017. 9.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사업인정을 받기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9. 22. 해당 사업이 관광수익과 분양 등을 통한 영리추구 목적의 시설 위주로 계획되어 있어 토지수용 당시 목적했던 공익사업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익성이 높은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등 이익의 공적 귀속 장치를 강화하라는 의견을 제시함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7. 9. 28. 담양군수가 인가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르면 공익성 확보를 위해 약정한 기부채납 조건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인가 취소, 공사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담양군은 시행자로 하여금 메타프로방스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위한 생태주차장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광장 등의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한 후 담양군에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공사 중지 처분 등을 통해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담양군은 시행자가 [별표] “블록별 시설물 준공 현황”⁴⁾과 같이 2025년 4월 현재까지 호텔, 리조트, 펜션, 상가 등 영리시설은 분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는 반면, 시행자가 기부채납 대상인 생태주차장 3, ⁴⁵⁾와 광장은 2025년 4월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도 공사 중지 등 구속력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매년 생태주차장과 광장의 준공 시기만 연장해 주고 있다.⁶⁾

그 결과 메타프로방스 내 영리시설은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편의시설인 생태주차장과 광장은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어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⁷⁾

4)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부지를 28개 블록으로 나눠 호텔, 리조트, 펜션, 상가 등 영리시설과 생태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임

5) 생태주차장3(10필지)은 5,586백만 원의 균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생태주차장4는 부지 매입도 되어 있지 않음. 시행자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마지막에 생태주차장을 준공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6) 담양군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메타프로방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환경개선과 관련하여 2023. 12. 28. 시행자에게 생태주차장3 조성 및 주차환경개선 관리방안 등 세부계획을 2024. 1. 5.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시행자는 세부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담양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7) 생태주차장3의 경우 균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균저당 해제 전에는 기부채납이 불가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준공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권리보전 미조치 등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부채납 확약서에 따르면 기부채납 대상 시설인 복합 전시카페 및 복합 공연장은 군민 무료입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 실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지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7. 9. 28. 담양군수가 인가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따르면 공익성 확보를 위해 약정한 기부채납 조건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담양군은 준공 후 20년 뒤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시설이 준공되면 즉시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행자가 기부채납 대상 시설을 기부채납 확약서의 내용과 같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담양군은 복합 전시카페 및 복합 공연장1, 2의 경우 2022. 4. 21. 준공되었는데도 2025년 4월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기부채납 확약서대로 운영하는지 관리·감독하지 않는 등 시행자가 준공

(제8조에 따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기부채납을 받지 못할 우려도 있음

후 20년 뒤 기부채납하기로 확약한 8개 시설 중 준공된 4개 시설에 대하여 2025년 4월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기부채납 확약서 대로 운영하는지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시행자는 복합 전시카페 및 복합 공연장2를 군민 등을 위한 전시 및 공연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단순 상업 목적의 카페로 운영하고 있고, 복합 전시카페 및 복합 공연장1을 2022. 9. 20. 담양군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유한회사 **[기자]**에 매도⁸⁾하여 기부채납을 어렵게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담양군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 생태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우선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 매각된 복합 전시카페 및 복합 공연장1은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기부채납 확약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여 확약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며, 앞으로 준공 후 20년 뒤 기부채납하기로 한 시설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담양군수는

①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기부채납 대상 시설인 생태주차장과 광장 등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한 후 담양군에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준공 후 20년 뒤 기부채납하기로 확약한 8개 시설 중 매도되거나 준공된 4개 시설은

8) 시행자는 해당 건물을 유한회사 **[기자]**에 매도하면서 20년 뒤 기부채납 대상 시설이라는 사실을 유한회사 **[기자]**에 고지하지 않음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② 앞으로 시행자가 기부채납 대상 시설을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시설물 기부채납 및 운영 확약서와 다르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20년 뒤 기부채납 하는 시설이 준공되면 즉시 담양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 조치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블록별 시설물 준공 현황

(단위: m²)

블록	시설명	시설구분	공정	주소	전체 면적 (기부채납 대상 면적)	기부채납 대상 시설물
1	메타펜션	영리시설	준공	-	11,183.8	-
2	상가	영리시설	준공	-	1,841.9	-
3	상가	영리시설	준공	-	5,980.4	-
4	펜션	영리시설	준공	-	4,464.6	-
5	상가	영리시설	준공	-	887.6	-
6	펜션	영리시설	준공	-	2,871.4	-
7	리조트	영리시설 (기부채납 포함)	준공	-	7,266 (464)	청년창업예술공방 전시체험장
8	상가	영리시설 (기부채납 포함)	미추진	-	3,262 (250)	북카페 및 키즈랜드
9	주차장(중앙)	기부채납	미추진	-	8,036 (8,036)	생태주차장3
10	가족호텔	영리시설	미추진	-	5,227	-
11	상가	영리시설 (기부채납 포함)	미추진	-	1,470 (495)	다목적홀
12	상가	영리시설	준공	-	5,712.8	-
13	펜션	영리시설	준공	-	2,079	-
14	상가	영리시설	미추진	-	2,340	-
15	경관녹지	영리시설 (기부채납 포함)	미추진	-	48,996.5 (595)	광장
16	상가	영리시설	준공	-	698.6	-
17	상가	영리시설	미추진	-	1,159	-
18	상가	영리시설	미추진	-	386	-
19	전시카페	기부채납	준공	-	2,009.5 (780)	복합 전시카페 및 복합 공연장1
20	메타플레이랜드	영리시설 (기부채납 포함)	미추진	-	8,926 (960)	메타플레이랜드
21	체육시설	영리시설	미추진	-	1,420	-
22	펜션	영리시설	준공	-	6,340.9	-
23	펜션	영리시설	준공	-	5,052.3	-
24	상가	영리시설	준공	-	3,965.4	-
25	관광호텔	영리시설 (기부채납 포함)	준공	-	6,763.5 (337)	컨벤션 센터
26	펜션	영리시설	미추진	-	930	-
27	전시카페	기부채납	준공	-	1,269 (401)	복합 전시카페 및 복합 공연장2
28	주차장	기반시설 (기부채납 포함)	미추진	-	2,700 (1,686)	생태주차장4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감사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부실 발급에 따른 농지 불법 취득 등

소관 기관 ① 담양군 ② 장성군

조치 기관 ① 담양군 ② 장성군

내용

1. 업무 개요

담양군은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등에 따라 관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아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리고 장성군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등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부실 발급에 따른 농지 불법 취득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¹⁾에 이용하거나 이용할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농지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 「농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농업경영이란 농업법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함

(2022. 5. 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등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과 면장 등(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 시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²⁾ 등을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농지법」 제57조에 따르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11조에 따르면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담양군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농업경영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하도록 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하고,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담양군은 농업법인 주식회사 ㈔³⁾(대표이사 CI, 이하 “㈔”라 한다) 와 농업법인 주식회사 ㈔⁴⁾(대표이사 CJ, 이하 “㈔”라 한다)가 로컬푸드 판매

2) 취득 농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영농거리, 주 재배예정 작물의 종류, 영농착수 시기를 기재하여야 함

3) 2019. 6. 27. 대표이사 CK와 사내이사 CL이 설립한 농업법인으로 2020. 5. 29. 대표이사 CK와 친분이 있던 CI로 대표이사가 변경됨

장을 건축하여 운영할 목적⁵⁾으로 [표]와 같이 2019. 12. 26.부터 2020. 1. 20.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6필지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
하면서 [별표] “취득농지(6필지) 관련 농업경영계획서 주요 항목 기재 내역”과
같이 주요 항목 대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농지
취득자격증명서를 그대로 발급하였다.

[표] **가카와 가타의 농지 취득 명세**

(단위: m², 백만 원)

구분	소재지	면적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일	취득일 ^{주)}	취득금액
가카	-	1,461	2019. 12. 26.	2019. 12. 26.	2019. 12. 30.	1,020
	-	1,772	2019. 12. 26.	2019. 12. 26.	2019. 12. 30.	
	-	1,815	2020. 1. 2.	2020. 1. 3.	2020. 1. 7.	1,015
가타	-	1,236	2020. 1. 16.	2020. 1. 17.	2020. 1. 20.	861
	-	151	2020. 1. 16.	2020. 1. 17.	2020. 1. 20.	
	-	1,298	2020. 1. 20.	2020. 1. 20.	2020. 1. 20.	320
합계	6필지	7,733		-		3,216

주: 토지대장상의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표기함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그 결과 가카와 가타는 2019. 12. 30.부터 2020. 1. 20.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6필지의 농지를 3,216백만 원에 취득한 후 2020. 3. 12.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각각 신청하여 2020. 6. 24. 건축허가를 받아 2021. 4. 28.부터
가파마트를 운영하게 되었다.⁶⁾

그리고 담양군은 가카와 가타가 실제로 농업경영의사가 없으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가카와 가타를 고발

4) 2019. 6. 25. 대표이사 CJ와 사내이사 CL이 설립한 농업법인으로 가카와 가타는 법인 주소, 등기상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가카 대표이사 CI와 가타 대표이사 CJ는 부부이며, 가카와 가타의 사내이사 CL은 농산물 판매장 부지를 물색한 공인중개사인 한편 가타가 취득한 ①⑤리 19 등 3필지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고, 가카와 가타가 취득한 농지 총 6필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자의 연락처가 모두 CI의 휴대전화번호로 되어 있음

5) CI는 담양군에서 로컬푸드 판매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담양군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인 CL을 통해 부지를 물색하였다고 진술함

6) 농지전용에 따른 공시지가가 평균 15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약 2.2배 증가함

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3.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불법 영위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또는 수시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등⁷⁾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와 제20조의4 및 제31조 등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농지를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농업법인이 농지를 전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군수 등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5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수 등은 매년 실시하는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성군은 전라남도 장성군에 소재지를 둔 ㈔가 2020. 6. 24. 전라남도 담양군 ⑨리 24 외 2필지(5,048㎡)의 농지를 전용하여 2021. 4. 28. 건축한 건축물 일부를 2021. 5. 1.부터 2024. 6. 30. 현재까지 주식회사 ㈔하(이하 “㈔하”라 한다)에 임대⁸⁾하여 월세 수익⁹⁾을 얻는 등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도 매년

7) 조합원 또는 사원이나 주주의 인적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 유무 등임

8) ㈔하는 ㈔ 소유 건축물 1개동 992㎡(300평) 중 496㎡(150평)을 임차하여 기타식품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 있음

9)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0만 원임

실시하는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 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담양군은 감사원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장성군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면서 ㈔[기타]가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앞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사원 처분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기타]와 ㈜[기타]는 ㈜[기타]와 임대차 계약이 아닌 특정매입계약을 맺은 것으로 소매업자(㈔[기타], ㈜[기타])가 납품업자(㈜[기타])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 후 해당 매출이익 중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동일한 소명자료를 2024. 8. 9. 제출하였다.

소명자료 검토결과 ㈜[기타]는 ㈔[기타]가 신축한 건축물에서 기타식품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기 위해 2021. 5. 3. 담양군에 식품 영업 신고서와 건강 기능식품 영업 신고서를 제출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영업장의 면적과 소재지를 증명하는 자료로 2021. 3. 30. ㈔[기타]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기타]와 ㈜[기타]는 소명자료 제출 하루 전인 2024. 8. 8. 법인등기부등본의 상호명에서 농업법인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사업으로 추가한 점을 고려할 때 **[기자]**와 **[기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담양군수는

- ① 「농지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 주식회사 **[기자]**와 농업법인 주식회사 **[기자]**에 대해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자가 농업경영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장성군수는 관내 소재지를 둔 농업법인 주식회사 **[기자]**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데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의4와 제3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취득농지(6필지) 관련 농업경영계획서 주요 항목 기재 내역

(단위: m²)

구분	기자			기타		
	①⑨리 23	①⑨리 24	①⑨리 32-7	①⑨리 25	①⑨리 26-2	①⑨리 19
취득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면적	1,461	1,772	1,815	1,236	151
	영농거리	×	×	×	×	×
	주 재배 예정 작목	벼	×	벼	×	×
	영농 착수시기	즉시	×	즉시	×	×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방안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	×	×	×	×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자기 노동력 및 일부고용	자기 노동력 및 일부고용	자기 노동력 및 일부고용	자기 노동력 및 일부고용	일부위탁
농업 기계·장비·시 설 확보방안	농업 기계 · 장비 보유현황	×	×	×	×	×
	농업기계 · 장비 보유계획	×	×	예초기 농약살포기	농약살포기	농약살포기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및 구 「농지법 시행규칙」(2022. 5. 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재구성

감사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행정재산(미디어 홍보관) 수탁기관 부실 선정 후 방치

소 관 기 관 담양군

조 치 기 관 담양군

내 용

1. 업무 개요

담양군은 2022. 5. 6.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복합문화공간¹⁾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²⁾한 미디어 홍보관³⁾의 관리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2022. 10. 2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공유재산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⁴⁾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10조의 [별표 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

1) 담양군과 순창군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 추진하는 지역개발연계사업인 전라도 1,000년 새로운 시작, 순담 Meta-Circle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임

2) 토지 매입비 1.5억 원, 건축비 16억 원 등임

3) 담양군 행정재산으로 부지 3,672㎡, 건물 1개 동(연면적 329.5㎡)임

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평가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인력·조직·장비·시설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의 선정기준⁵⁾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담양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와 제14조 및 공유재산 위·수탁 협약서 제12조 등에 따르면 군수는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 사무의 명칭·범위 및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이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휴업을 7일 이상 하는 등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에 자체 없이 시설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담양군이 미디어 홍보관을 관리·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수탁기관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위탁 사무 내용 등을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사전 승인 없이 미디어 홍보관을 7일 이상 무단 휴업할 때는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한 후 위탁 시설의

5) ① 인력·조직·장비·시설 및 기술 활용 가능성, ②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경제적 효율성, ③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종사자에 대한 임금지급, 처우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다), ④ 사업계획의 타당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⑤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임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담양군 **명**과 CO, **팀장 CP**, **과장 CQ**은 3차례(2022. 5. 9., 2022. 5. 25., 2022. 7. 12.)에 걸친 미디어 홍보관 수탁기관 모집 입찰공고가 모두 유찰되자 2022. 10. 24. **내내**유한회사(이하 “**내내**”라 한다)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자격을 검증한 후 **내내**와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군수 방침⁶⁾을 받고도, CQ는 **내내**의 주소지⁷⁾가 담양군이 아니라는 사유로 제안서도 제출하지 않은 **내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⁸⁾한 후 CO와 CP에게 **내내**는 **내내**에서 분할된 법인이라고 하면서 **내내**과 공유재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고, CO와 CP는 **내내**가 **내내**에서 분할된 법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CQ의 말만 믿고 **내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후 CO가 2022. 10. 24. **내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 올리자 CP가 이를 중간 결재하였고 CQ가 최종 결재하여 담양군은 **내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CQ 등 3명은 **내내**와 공유재산 위·수탁 협약서(위탁기간 3년, 2022. 10. 24.~2025. 10. 23.)를 체결하면서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지 않았고,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내**가 미디어 홍보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홍보 및 체험활동 등의 위탁 사무를 공유재산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6) 담양군은 미디어 홍보관에 대한 수탁기관 모집 입찰이 3차례 유찰되자 3차 입찰에 참여한 CR(담양군 관내에서 펜션 운영)이 소개한 **내내**로부터 미디어 홍보관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았고,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내내**가 수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내내**와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군수 CS의 방침을 받음

7) 전라남도 화순군임

8) CQ는 **내내**가 **내내**로부터 분할되었다는 CR의 말을 믿고 수탁기관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 **내내**와 **내내**는 별개의 회사로 서류상 아무런 관계가 없음

또한 담양군은 **[내가]**가 사전 승인 없이 2024. 2. 12.부터 2024. 6. 13. 현재까지 7일 이상 미디어 홍보관을 관리·운영하지 않은 채(빵집도 미운영) 무단 휴업하고 있는데도 협약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담양군은 19억여 원을 들여 건축한 미디어 홍보관을 홍보 및 체험 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2022. 10. 24.부터 2024. 2. 11.까지 **[내가]**의 빵집으로만 사용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담양군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면서 수탁기관의 수탁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이행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해지 후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향후 적법하게 위·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⁹⁾

조치할 사항 담양군수는

- ① 행정재산인 미디어 홍보관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홍보 및 체험활동 등 당초 목적에 따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앞으로 관리위탁 수행능력 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사무를 명시하지 않은 채 협약서를 체결하며, 사전 승인 없이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관리·운영하지 않는데도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9) 담양군은 **[내가]**가 2024. 8. 9. 미디어 홍보관의 사용허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자 2024. 10. 23. 사용허가를 취소함

감사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미송부 및 청문 등 절차 미이행

소관 기관 ① 곡성군 ② 담양군

조치 기관 ① 곡성군 ② 담양군

내 용

1. 업무 개요

곡성군과 담양군은 「농지법」 제54조 등에 따라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여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¹⁾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등에 따라 처분의무 발생 통지 등을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 제5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10조와 제11조 및 제55조 등에 따르면 군수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²⁾(이하 “처분대상농지”라 한다)를 적발한 경우 청문을 거쳐 농지 소유자에게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하고(이하 “처분의무 발생 통지”라 한다), 처분의무 발생

1) 「농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함

2) 휴경, 불법 전용 및 임대 등임

통지를 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이하 “처분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지법」 제63조에 따르면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농지 소유자에게는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 후 처분대상 농지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군수 등에게 송부하고, 군수 등은 이를 검토하여 청문을 한 후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하며, 군수 등은 시·도지사에게 처분의무 발생 통지 현황 등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³⁾

따라서 곡성군과 담양군 관내 읍·면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 후 처분대상 농지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군에 송부하여야 하고, 곡성군과 담양군은 청문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분대상농지 결정, 농지 소유자에 대한 처분의무 발생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일련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라남도에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사실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곡성군 관내 11개 읍·면은 [표 1]과 같이 2021년과 2022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시 처분대상농지 5,458필지($4,924,263\text{m}^2$)를 적발하고도 곡성군(군과)에는

3) 읍·면·동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후 처분대상농지 등의 정보를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시·군·구(본청 총괄부서)에서 처분대상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하고, 농지정보시스템에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확정하는 한편 해당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처분의무 발생 통지 등 후속조치 내용을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함

처분대상농지가 1필지도 없는 것으로 송부하였다.

[표 1] 2021년과 2022년 곡성군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필지, m²)

구분	조사 대상			처분대상농지			비처분대상농지		
	인원수	필지 수	면적	인원수	필지 수	면적	인원수	필지 수	면적
곡성군	2021년	6,418	13,436	17,705,391	1,799	3,054	2,741,434	4,619	10,382
	2022년	4,594	8,721	10,272,576	1,469	2,404	2,182,829	3,125	6,317
합계	11,012	22,157	27,977,967	3,268	5,458	4,924,263	7,744	16,699	23,053,704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그리고 곡성군은 관내 11개 읍·면에서 2021년과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 후 적발한 처분대상농지가 1필지도 없는 것으로 송부하였는데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라남도에 관내 11개 읍·면이 보고한 것과 같이 적발한 처분대상농지가 1필지도 없는 것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하였다.

또한 담양군⁴⁾은 [표 2]와 같이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처분대상농지 370필지(378,511m²)의 소유자 201명⁵⁾에게 청문(방문 또는 의견서 제출) 공고를 한 후 의견서를 제출⁶⁾한 86명은 청문⁷⁾(청문 주재자가 청문조서와 의견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직접 방문한 3명은 청문 주재자가 청문조서는 작성하였으나 의견서는 작성하지 않아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에 참여한 89명에 대해 처분대상농지 결정 등 후속 조치⁸⁾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문에 참석하지

4) 담양군의 경우 관내 12개 읍·면 대부분(2021년 10개, 2022년 9개)이 농지이용실태조사 후 처분대상농지 등의 정보를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함

5) 처분대상농지의 소유자는 201명으로 동일한데 청문대상 필지는 369필지로 1필지가 차이나는 이유는 확인되지 않음

6)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르면 농지소유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7) 「행정절차법」 제34조와 제34조의2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조서와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8)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 등에 따라 처분대상농지 결정, 처분의무 발생 통지 등의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함

않은 채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112명에 대해서도 처분대상농지 결정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2] 2021년과 2022년 담양군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필지, m^2)

구분	조사 대상			처분대상농지			비처분대상농지			
	인원수	필지 수	면적	인원수	필지 수	면적	인원수	필지 수	면적	
담양군	2021년	10,268	11,112	14,022,576	201	370	378,511	10,067	10,742	13,644,065
	2022년	19,243	10,792	31,352,400	567	909	916,973	18,676	9,883	30,435,427
합계	29,511	21,904	45,374,976	768	1,279	1,295,484	28,743	20,625	44,079,492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아울러 담양군은 [표 2]와 같이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처분대상농지 909필지($916,973 m^2$)의 소유자 567명 모두에게 청문 공고를 하지 않아 처분대상 농지 결정 등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 관내 12개 읍·면에서 2021년과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적발한 처분대상농지가 1필지도 없는 것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4. 4. 1.~5. 21.) 중 곡성군과 담양군이 2022년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 적발한 처분대상농지 3,313필지($3,099,802 m^2$) 중 263필지($658,127 m^2$)⁹⁾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리 305에 소재한 농지($2,340 m^2$)의 경우 2024년 5월 현재 농기계 야적장으로 불법전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표 3]과 [별표]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 명세”와 같이 점검대상의 84%에 해당하는 221필지($556,061 m^2$)가 곡성군과 담양군으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채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고 있었다.¹⁰⁾

9) 2024년 5월 현재 소유자 변경이 없는 불법전용농지 및 면적 2,000 m^2 이상인 휴경농지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함

[표 3] 곡성군과 담양군 농지이용실태조사 점검 결과

(단위: 명, 필지, m²)

구분	점검 대상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농지			농업경영에 이용 중인 농지		
	인원수	필지 수	면적	인원수	필지 수	면적	인원수	필지 수	면적
곡성군	210	186	468,749	175	155	387,533	35	31	81,216
담양군	96	77	189,378	82	66	168,528	14	11	20,850
합계	306	263	658,127	257	221	556,061	49	42	102,066

주: 인원수와 면적은 등기부등본상의 인원수와 면적을 기재함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곡성군과 담양군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 적발된 처분대상농지는 청문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대상 농지 결정 등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곡성군과 담양군은 2021년과 2022년 적발된 처분대상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를 다시 조사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대상농지 결정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곡성군수는

① 2021년과 2022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적발된 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를 다시 조사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의무

10) 곡성군과 담양군은 2021년과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위해 고용한 조사원 51명의 인건비 등 예산(463,568,650원)이 낭비됨

발생 통지 등 후속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관내 읍·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적발하고도 군에 송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담양군수는

① 2021년과 2022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적발된 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를 다시 조사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의무 발생 통지 등 후속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적발한 농지에 대해 청문을 하여 처분의무 발생 통지 등 후속 조치를 하며, 전라남도에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사실대로 송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 명세

(단위: m²)

기관	연번	적발 연도	적발사유	소유자	농지 소재지	면적	이용실태
곡성군	1	2022	불법전용	-	-	114	불법전용
	2	2022	불법전용	-	-	226.4	휴경
	3	2022	불법전용	-	-	162	휴경
	4	2022	불법전용	-	-	324	불법전용
	5	2022	불법전용	-	-	858	불법전용
	6	2022	불법전용	-	-	185	불법전용
	7	2022	불법전용	-	-	152	불법전용
	8	2022	불법전용	-	-	110	불법전용
	9	2022	불법전용	-	-	215	불법전용
	10	2022	불법전용	-	-	162	불법전용
	11	2022	불법전용	-	-	232	불법전용
	12	2022	불법전용	-	-	290	불법전용
	13	2022	불법전용	-	-	266	불법전용
	14	2022	불법전용	-	-	106	불법전용
	15	2022	불법전용	-	-	141	휴경
	16	2022	불법전용	-	-	494	불법전용
	17	2022	불법전용	-	-	66	불법전용
	18	2022	불법전용	-	-	496	불법전용
	19	2022	불법전용	-	-	341	불법전용
	20	2022	불법전용	-	-	89	불법전용

기관	연번	적발 연도	적발사유	소유자	농지 소재지	면적	이용실태
곡성군	21	2022	불법전용	-	-	112	불법전용
	22	2022	불법전용	-	-	1,907	불법전용
	23	2022	불법전용	-	-	179	불법전용
	24	2022	휴경	-	-	2,208	휴경
	25	2022	휴경	-	-	2,132	휴경
	26	2022	휴경	-	-	2,846	휴경
	27	2022	휴경	-	-	3,320	휴경
	28	2022	휴경	-	-	2,438	휴경
	29	2022	휴경	-	-	4,990	휴경
	30	2022	휴경	-	-	2,155	휴경
	31	2022	휴경	-	-	2,945	휴경
	32	2022	휴경	-	-	2,089	휴경
	33	2022	휴경	-	-	3,788	휴경
	34	2022	휴경	-	-	2,198	휴경
	35	2022	휴경	-	-	2,889	휴경
	36	2022	휴경	-	-	2,231	휴경
	37	2022	휴경	-	-	2,805	휴경
	38	2022	휴경	-	-	2,337	휴경
	39	2022	휴경	-	-	4,199	휴경
	40	2022	휴경	-	-	4,714	휴경
	41	2022	휴경	-	-	2,311	휴경
	42	2022	휴경	-	-	2,083	휴경

기관	연번	적발 연도	적발사유	소유자	농지 소재지	면적	이용실태
곡성군	43	2022	휴경	-	-	2,374	휴경
	44	2022	휴경	-	-	6,142	휴경
	45	2022	휴경	-	-	2,040	휴경
	46	2022	휴경	-	-	3,336	휴경
	47	2022	휴경	-	-	3,683	휴경
	48	2022	휴경	-	-	2,020	휴경
	49	2022	휴경	-	-	3,266	휴경
	50	2022	휴경	-	-	2,271	휴경
	51	2022	휴경	-	-	2,281	휴경
	52	2022	휴경	-	-	2,648	휴경
	53	2022	휴경	-	-	2,331	휴경
	54	2022	휴경	-	-	3,068	휴경
	55	2022	휴경	-	-	3,098	휴경
	56	2022	휴경	-	-	2,628	휴경
	57	2022	휴경	-	-	3,250	휴경
	58	2022	휴경	-	-	2,638	휴경
	59	2022	휴경	-	-	2,453	휴경
	60	2022	휴경	-	-	2,846	휴경
	61	2022	휴경	-	-	3,167	휴경
	62	2022	휴경	-	-	4,787	휴경
	63	2022	휴경	-	-	2,740	휴경
	64	2022	휴경	-	-	4,334	휴경

기관	연번	적발 연도	적발사유	소유자	농지 소재지	면적	이용실태
곡성군	65	2022	휴경	-	-	3,868	휴경
	66	2022	휴경	-	-	2,899	휴경
	67	2022	휴경	-	-	5,851	휴경
	68	2022	휴경	-	-	5,342	휴경
	69	2022	휴경	-	-	2,218	휴경
	70	2022	휴경	-	-	3,114	휴경
	71	2022	휴경	-	-	3,083	휴경
	72	2022	휴경	-	-	2,086	휴경
	73	2022	휴경	-	-	3,197	휴경
	74	2022	휴경	-	-	2,345	휴경
	75	2022	휴경	-	-	2,149	불법전용
	76	2022	휴경	-	-	2,215	휴경
	77	2022	휴경	-	-	3,190	휴경
	78	2022	휴경	-	-	2,129	휴경
	79	2022	휴경	-	-	2,850	휴경
	80	2022	휴경	-	-	2,860	휴경
	81	2022	휴경	-	-	2,483	휴경
	82	2022	휴경	-	-	2,991	휴경
	83	2022	휴경	-	-	2,053	휴경
	84	2022	휴경	-	-	2,235	휴경
	85	2022	휴경	-	-	2,076	휴경
	86	2022	휴경	-	-	2,139	휴경

기관	연번	적발 연도	적발사유	소유자	농지 소재지	면적	이용실태
곡성군	87	2022	휴경	-	-	2,020	휴경
	88	2022	휴경	-	-	4,793	휴경
	89	2022	휴경	-	-	3,160	휴경
	90	2022	휴경	-	-	5,467	휴경
	91	2022	휴경	-	-	2,124	휴경
	92	2022	휴경	-	-	2,248	휴경
	93	2022	휴경	-	-	2,387	휴경
	94	2022	휴경	-	-	2,436	휴경
	95	2022	휴경	-	-	3,542	휴경
	96	2022	휴경	-	-	2,721	휴경
	97	2022	휴경	-	-	2,112	휴경
	98	2022	휴경	-	-	3,160	휴경
	99	2022	휴경	-	-	2,059	휴경
	100	2022	휴경	-	-	3,590	휴경
	101	2022	휴경	-	-	3,164	휴경
	102	2022	휴경	-	-	2,843	휴경
	103	2022	휴경	-	-	3,117	휴경
	104	2022	휴경	-	-	2,179	휴경
	105	2022	휴경	-	-	2,251	휴경
	106	2022	휴경	-	-	3,931	휴경
	107	2022	휴경	-	-	2,817	휴경
	108	2022	휴경	-	-	2,238	휴경

기관	연번	적발 연도	적발사유	소유자	농지 소재지	면적	이용실태
곡성군	109	2022	휴경	-	-	2,453	휴경
	110	2022	휴경	-	-	3,567	휴경
	111	2022	휴경	-	-	2,205	휴경
	112	2022	휴경	-	-	2,079	휴경
	113	2022	휴경	-	-	2,430	휴경
	114	2022	휴경	-	-	2,350	휴경
	115	2022	휴경	-	-	2,221	휴경
	116	2022	휴경	-	-	3,832	휴경
	117	2022	휴경	-	-	2,089	휴경
	118	2022	휴경	-	-	3,175	휴경
	119	2022	휴경	-	-	2,855	휴경
	120	2022	휴경	-	-	2,242	휴경
	121	2022	휴경	-	-	3,991	휴경
	122	2022	휴경	-	-	3,127	휴경
	123	2022	휴경	-	-	2,526	휴경
	124	2022	휴경	-	-	2,853	휴경
	125	2022	휴경	-	-	2,129	휴경
	126	2022	휴경	-	-	2,090	휴경
	127	2022	휴경	-	-	2,607	휴경
	128	2022	휴경	-	-	2,612	휴경
	129	2022	휴경	-	-	3,269	휴경
	130	2022	휴경	-	-	2,426	휴경

기관	연번	적발 연도	적발사유	소유자	농지 소재지	면적	이용실태
곡성군	131	2022	휴경	-	-	2,554	휴경
	132	2022	휴경	-	-	2,502	휴경
	133	2022	휴경	-	-	2,066	휴경
	134	2022	휴경	-	-	3,408	휴경
	135	2022	휴경	-	-	2,774	휴경
	136	2022	휴경	-	-	2,972	휴경
	137	2022	휴경	-	-	2,063	휴경
	138	2022	휴경	-	-	3,455	휴경
	139	2022	휴경	-	-	3,752	휴경
	140	2022	휴경	-	-	2,040	휴경
	141	2022	휴경	-	-	3,041	휴경
	142	2022	휴경	-	-	2,210	휴경
	143	2022	휴경	-	-	2,100	휴경
	144	2022	휴경	-	-	3,742	휴경
	145	2022	휴경	-	-	3,640	휴경
	146	2022	휴경	-	-	2,413	휴경
	147	2022	휴경	-	-	2,621	휴경
	148	2022	휴경	-	-	2,258	휴경
	149	2022	휴경	-	-	3,957	휴경
	150	2022	휴경	-	-	2,212	휴경
	151	2022	휴경	-	-	2,682	휴경
	152	2022	휴경	-	-	2,179	휴경

기관	연번	적발 연도	적발사유	소유자	농지 소재지	면적	이용실태
곡성군	153	2022	휴경	-	-	4,678	휴경
	154	2022	휴경	-	-	4,041	휴경
	155	2022	휴경	-	-	2,007	휴경
소계				175명	155필지	387,533	
담양군	1	2022	불법전용	-	-	165	불법전용
	2	2022	불법전용	-	-	194	불법전용
	3	2022	불법전용	-	-	200	불법전용
	4	2022	불법전용	-	-	517	불법전용
	5	2022	불법전용	-	-	2,340	불법전용
	6	2022	불법전용	-	-	596	불법전용
	7	2022	휴경	-	-	3,960	휴경
	8	2022	휴경	-	-	3,471	불법전용
	9	2022	휴경	-	-	2,043	불법전용
	10	2022	휴경	-	-	2,853	휴경
	11	2022	휴경	-	-	3,094	휴경
	12	2022	휴경	-	-	3,782	휴경
	13	2022	휴경	-	-	3,053	휴경
	14	2022	휴경	-	-	6,361	불법전용
	15	2022	휴경	-	-	4,717.10	휴경
	16	2022	휴경	-	-	328.5	불법전용
	17	2022	휴경	-	-	2,464	불법전용
	18	2022	휴경	-	-	2,197	휴경

기관	연번	적발 연도	적발사유	소유자	농지 소재지	면적	이용실태
담양군	19	2022	휴경	-	-	2,916	휴경
	20	2022	휴경	-	-	2,417	휴경
	21	2022	휴경	-	-	3,035	휴경
	22	2022	휴경	-	-	2,678	휴경
	23	2022	휴경	-	-	2,250	휴경
	24	2022	휴경	-	-	2,281	불법전용
	25	2022	휴경	-	-	1,931	휴경
	26	2022	휴경	-	-	3,634	휴경
	27	2022	휴경	-	-	6,231	휴경
	28	2022	휴경	-	-	3,597	휴경
	29	2022	휴경	-	-	3,473	휴경
	30	2022	휴경	-	-	3,049	휴경
	31	2022	휴경	-	-	2,904	휴경
	32	2022	휴경	-	-	4,198	휴경
	33	2022	휴경	-	-	4,856	휴경
	34	2022	휴경	-	-	4,003	휴경
	35	2022	휴경	-	-	3,244	휴경
	36	2022	휴경	-	-	2,099	휴경
	37	2022	휴경	-	-	3,888	휴경
	38	2022	휴경	-	-	2,062	휴경
	39	2022	휴경	-	-	2,212	휴경

기관	연번	적발 연도	적발사유	소유자	농지 소재지	면적	이용실태
담양군	40	2022	휴경	-	-	2,724	휴경
	41	2022	휴경	-	-	2,651	휴경
	42	2022	휴경	-	-	3,740	휴경
	43	2022	휴경	-	-	2,394	휴경
	44	2022	휴경	-	-	2,856	휴경
	45	2022	휴경	-	-	2,376	휴경
	46	2022	휴경	-	-	7,955	휴경
	47	2022	휴경	-	-	2,565	휴경
	48	2022	휴경	-	-	155	불법전용
	49	2022	휴경	-	-	589	불법전용
	50	2022	휴경	-	-	589	휴경
	51	2022	휴경	-	-	403	불법전용
	52	2022	휴경	-	-	2,742	휴경
	53	2022	휴경	-	-	386	불법전용
	54	2022	휴경	-	-	242	휴경
	55	2022	휴경	-	-	305	불법전용
	56	2022	휴경	-	-	305	불법전용
	57	2022	휴경	-	-	883	휴경
	58	2022	휴경	-	-	806	휴경
	59	2022	휴경	-	-	4,193	휴경
	60	2022	휴경	-	-	2,532	불법전용

기관	연번	적발 연도	적발사유	소유자	농지 소재지	면적	이용실태
담양군	61	2022	휴경	-	-	3,340	휴경
	62	2022	휴경	-	-	4,337	휴경
	63	2022	휴경	-	-	2,945	휴경
	64	2022	휴경	-	-	2,169	휴경
	65	2022	휴경	-	-	2,717	휴경
	66	2022	휴경	-	-	2,335	휴경
소계				82명	66필지	168,528	
합계				257명	221필지	556,061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감사원

주 의 요 구

제 목 분양계약을 미이행한 업체에 유리하도록 실시계획 변경 등

소 관 기 관 담양군

조 치 기 관 담양군

내 용

1. 업무 개요

담양군은 2014. 1. 21. 「도시개발법」에 따라 관내 일원($1,282,698\text{m}^2$)에 학교와 문화시설 등 문화·관광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이하 “ $\ominus\ominus$ 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전라남도에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전라남도는 2014. 4. 24.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면서 담양군수를 $\ominus\ominus$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담양군은 2014. 8. 19. $\text{내}\text{내}$ 주식회사¹¹⁾(이하 “SPC”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16. 3. 9. 전라남도에 $\ominus\ominus$ 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와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등을 신청하였고, 전라남도는 2016. 6. 2. 사업시행자를 SPC로 이관하는 것과 2016. 9. 8. $\ominus\ominus$ 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인가·고시하였다.

11) 2015. 10. 19. 담양군 등은 자본금을 출자(담양군 20%, $\text{내}\text{내}$ 주식회사 50%, $\text{내}\text{내}$ 주식회사 30%)하여 SPC를 운영하는 것으로 주주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 9. 7.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후 2021. 12. 14. SPC를 청산함

전라남도가 2016. 9. 8. 인가·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르면 학교(중·고등학교)¹²⁾를 조성할 부지인 ③③리 915-2 일원($18,438\text{m}^2$, 이하 “1번 토지”라 한다)과 문화시설을 조성할 부지인 ③③리 935-1 일원($13,544\text{m}^2$, 이하 “2번 토지”라 한다)의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¹³⁾ 학교(중·고등학교)는 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다.¹⁴⁾

한편, SPC는 2017. 5. 15.과 2019. 1. 15. 열린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1, 2번 토지를 감정가격(1번 토지 3,853백만여 원, 2번 토지 3,128백만여 원) 이상으로 경쟁 입찰 분양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2017. 5. 24.¹⁵⁾과 2021. 1. 20. ~~내~~~~내~~학원주식회사(대표이사 CT, 이하 “~~내~~~~내~~”라 한다)와 1, 2번 토지 분양계약(1번 토지 3,853백만여 원, 2번 토지 2,500백만 원)을 체결하였다.

2. 분양계약을 미이행한 ~~내~~~~내~~에 유리하도록 실시계획 변경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담양군이 SPC의 요청에 따라 2017. 5. 12. 공고한 1번 토지의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1번 토지의 건축물 용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해져 있고, 낙찰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SPC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한편 해제에 따른 위약금(매각대금의 10%)은

12) 담양군은 2015. 12. 9. ③③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학교 신설 요인이 없다는 공문을 받았으나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기능 확보 및 내국인에 대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6. 3. 9. 실시계획에 반영한 후 2016. 9. 8. 전라남도로부터 인가·고시를 받음

13) 2020. 9. 7. ③③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1번 토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이 확정(1번 토지 $18,430.6\text{m}^2$, 2번 토지 $13,535.5\text{m}^2$)되었고, 지번도 변경(1번 토지 담양군 ③③리 180, 2번 토지 담양군 ③③리 182)됨

1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조 등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함

15) SPC는 2017. 5. 12. 1번 토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 공고한 후 단독으로 입찰한 ~~내~~~~내~~와 2017. 5. 24. 감정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함

SPC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SPC와 [내비]는 2017. 5. 24. 입찰 공고문의 내용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¹⁶⁾

그리고 SPC 주주협약서 제21조 등과 정관 제28조 등에 따르면 ☺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과 분양 용지의 가격, 공급 등에 관한 사항 및 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담양군은 SPC 주주총회에 주주로 참여하고 이사회에 담양군이 지명한 자(1명¹⁷⁾)를 이사로 참여시키는 등으로 사실상 SPC를 지배¹⁸⁾함으로써 실시계획 변경과 분양용지 공급 등에 대해 SPC를 지도·감독하였다.

한편 담양군은 2018년 9월경(날짜 모름) [내비]가 대안학교¹⁹⁾ 설립인가²⁰⁾를 받지 못하자 1번 토지를 학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SPC로부터 보고받았다.

16) 분양계약서 제8조 등에 따르면 1번 토지의 용도는 교육시설용지(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내비]가 1번 토지의 지정 용도인 학교를 설립하지 않는 등 [내비]가 책임질 자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와 [내비]가 중도금 납부를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때는 SPC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은 SPC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음. 담양군은 분양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음

17) 주주협약서에 이사는 총 5명으로, 1명은 담양군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SPC는 2016. 1. 22. 담양군이 지명한 CU(2011. 3. 9. 담양군 퇴직)를 이사로 선임함

18) SPC 주주협약서 제20조와 제21조 및 정관 제26조와 제28조에 따르면 ☺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주요한 계약의 체결,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유효하게 성립된 주주총회에서 공공출자자인 담양군을 포함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삼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SPC 주주협약서 제25조와 제26조 및 정관 제38조에 따르면 분양용지의 가격,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이사회에서 공공출자자인 담양군을 포함하여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SPC 지분율이 20%에 불과한 담양군이 반대하면 주주총회와 이사회 상정 안건이 부결되는 구조임

19) 담양군은 [내비]가 1번 토지 입찰 공고(2017. 5. 12.)가 있기 전인 2017. 4. 28. 1번 토지에 국제교육이 가능한 대안학교 설립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자 2017. 5. 4. 사업제안서를 SPC에 전달하였고, 2017. 6. 27. 1번 토지를 분양받은 [내비]와 1번 토지에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함

20) 「초·중등교육법」 제4조와 제60조의3 등에 따르면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담양군은 **나****바**가 대안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여 1번 토지에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SPC로 하여금 **나****바**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위약금(계약금)을 SPC에 귀속하도록 한 후 다시 분양공고를 하여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담양군 **문**과 CV는 **나****바**가 대안학교 설립은 추진하지 않은 채 2018년 9월경(날짜 모름) 1번 토지 분양계약과 다르게 대안학교가 아닌 학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 변경을 SPC에 요청하였는데도 SPC로 하여금 1번 토지 분양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지 않고, 2018. 12. 3. 전라남도에 1번 토지에 학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 공문을 기안하여 같은 과 투자유치담당 CW와 **문**과장 CX에게 결재를 올렸고, CW와 CX는 CV에게 분양계약 해제 등을 지시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결재하여 전라남도에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다.²¹⁾

그 결과 **나****바**는 분양계약 해제 없이 학교만 건축이 가능한 1번 토지에 학원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3. 조성토지 저가 수의매각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도시개발법」 제26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5-6-1 등에 따르면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면 토지의

21) 전라남도는 2019. 2. 14. 담양군이 신청한 대로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고시함

용도,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 결정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 2회 이상 경쟁 입찰을 한 결과 조성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공급가격의 재결정으로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조성토지 등에 대한 용도 및 건축 제한사항 등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다시 공고를 하여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 5-4-1 등에 따르면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이하 “감정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는 토지만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SPC는 2018. 10. 17. ③④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2번 토지를 3,128백만여 원으로 감정평가하고, 2019. 1. 18. 경쟁입찰로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1, 2차 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된 상태에서 2020년 10월경(날짜 모름) ⑤⑥로부터 기숙사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최대 2,500백만 원에 2번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SPC는 2020. 10. 22. 담양군에 2번 토지의 경우 경쟁입찰 결과 2회 유찰되는 등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SPC 주주협약서 제41조에 따라 2,500백만 원에 할인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한 후 2번 토지를 ⑤⑥에 수의계약으로 할인분양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면서 문화시설을 조성할 부지인 2번 토지에 기숙사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담양군은 SPC가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는 2번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2회 이상 유찰되어 공급 가격을 낮추거나 용도 및 건축 제한사항을 완화하는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SPC로 하여금 다시 분양공고를 하여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담양군 **■**과 CY는 SPC로 하여금 다시 분양공고를 하여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2번 토지를 공급하도록 하지 않은 채 2020. 11. 9. **■■■**에 수의계약으로 2,500백만 원에 할인분양하고, 기숙사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첨담문화복합단지 문화복합용지 매각 방안 검토 보고” 문서를 기안하여 같은 과 투자유치담당 CZ에게 검토 결과를 올렸고, CZ는 CY에게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2번 토지를 공급하도록 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결재하는 등 군수 DI의 최종 결재를 받아 2020. 11. 13. SPC에 요청사항을 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SPC는 2021. 1. 20. **■■■**와 2번 토지를 감정가격 3,128백만여 원보다 628백만여 원이 적은 2,500백만 원에 매각하고, 지구단위계획(종 상향 및 건축물 용도 추가 반영)을 변경하는 특약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²²⁾

이후 SPC는 2021. 3. 23. 담양군에 2번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제1종일반주거 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하고, 건축물 높이를 변경(4층→7층)하며, 용도를 변경(기숙사 등 추가)하는 내용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²³⁾하였고,

22) SPC는 2번 토지 매각 후 2021. 3. 11.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2번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감정가격은 3,629백만여 원으로 평가됨

23) SPC는 토지가치 상승분 907백만여 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도 같이 제출함

담양군은 2021. 6. 18.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SPC의 요청대로 변경·고시하였다.

그 결과 ~~나~~는 2번 토지를 감정가격 3,128백만여 원보다 628백만여 원이 적은 2,500백만 원에 매입하였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2번 토지에 기숙사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담양군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감정가격 이하로 분양할 때는 재공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등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담양군수는

- ①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계약자가 분양계약 요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불가능한데도 분양계약 해제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등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조성토지를 입찰공고 없이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것을 승인한 후 건축물 용도를 완화하는 등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산지복구비 미예치 및 조성계획 무단 변경 방지

소관기관 ① 곡성군 ② 전라남도

조치기관 ① 곡성군 ② 전라남도

내용

1. 업무 개요

곡성군은 2021년 8월(날짜 모름) 주식회사 [내사](대표이사 DA, 이하 “[내사]”라 한다)로부터 관내 ⑤면 ③④리 산150-2 등 3필지에 룰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 설치 목적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이하 “공중이동시설 조성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2021. 11. 2. 전라남도에 제출하였고, 2022. 1. 11. [내사]가 신청한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등 공중이동시설 조성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¹⁾결과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2022. 1. 17. [내사]의 공중이동시설 조성계획(사업비 5억 원, 사업기간 2022년 2~8월)을 승인·고시하였다.

2. 산지복구비 예치 없이 산지전용신고 수리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과 「행정기본법」 제24조 제5항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 요청을 받은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에 위반되면 협의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산지관리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산림레포츠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7조와 제38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복구 등에 필요한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 등에게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곡성군이 [내사]가 신청한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때는 [내사]로부터 복구비를 예치받은 후 수리를 하여야 했다.²⁾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곡성군 [미실] DB는 2021. 12. 14. 전라남도(匿과)로부터 곡성 ⑤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 신청에 따른 협의 문서를 받은 후 2022. 1. 11. [내사]가 신청한 ⑤면 ③④리 산150-2 등 2필지($4,546\text{m}^2$)의 산지전용신고(협의)를 수리하면서 [내사]로부터 복구비를 받지 않은 채 “산지전용신고(협의) 수리 알림” 문서를 기안하여 [미실] 팀장 DC에게 결재를 올렸고, DC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중간 결재한 후 [미실]장 DD의 결재를 받아 [匿과]에 해당 문서를 송부하였으며 [匿과]는 2022. 1. 11. 전라남도에 조성계획 신청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결과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전라남도는 2022. 1. 17. [내사]의 공중이동시설 조성계획을 승인·고시하게 되어 [내사]가 사업종료 후 산지를 복구하지 않거나 부도 시 산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166백만여 원)을 곡성군이 부담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

3. 당초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산림레포츠시설을 조성하는데도 방치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2) 블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 등 산림레포츠시설은 「산지관리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복구비 면제(산지전용하려는 면적이 660m^2 미만 등) 대상은 아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승인받은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곡성군은 2022. 10. 13.부터 2024. 1. 5.까지 3회에 걸쳐 전라남도로부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변경 미승인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을 요청하도록 하는 문서를 받았다.

따라서 곡성군은 내사가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은 공중이동시설 조성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는지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내사로 하여금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곡성군은 전라남도로부터 3회에 걸쳐 공문을 받고도 내사가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은 공중이동시설 조성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거나 내사로 하여금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4. 4. 1.~5. 21.) 중 내사가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은 공중이동시설 조성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는지 확인한 결과, 공중이동시설 주행트랙 지지를 위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23개 지지구조물은 7개만 설치하였고, 조성계획에 없는 모노레일을 임의로 설치하는 등 [표]와 같이 조성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조성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이행한 현황

구분	조성계획	실제 설치
주행트랙	660m	410m
지지구조물	철제구조물 23개와 기준(직경 25cm, 둘레 79cm)에 맞는 자연생목 110수에 주행트랙 지지	철제구조물 7개와 기준에 맞지 않는 자연생목에 주행트랙 지지 (110수 중 11수 기준 미달)
주행안전확보시스템 중 장비회수시스템	설치 승인	모노레일 (장비회수시스템 및 이용자 이동)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그 결과 산림레포츠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³⁾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곡성군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 대신로 하여금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전라남도 등과 협의하여 공중이동시설 조성계획변경 승인 또는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전라남도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 대신로가 공중이동시설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공중이동시설을 조성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공중이동시설 조성계획 승인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대신로는 2021년 12월 전라남도에 산림욕장(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 승인

3) 대신로는 산림레포츠시설을 설치한 후 경영난 등을 이유로 현재 운영은 하지 않고 있음

신청에 따른 보완요구사항 제출 시 지지구조물의 수량과 레일의 길이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출하였고, 모노레일도 허가 기관의 요청사항이 없어 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2024. 8. 28. 제출하였다.

소명자료 검토결과 전라남도는 2022. 1. 17. **[내사]**가 신청한 공중이동시설 조성계획 승인 시 이용객 편의 및 안전 제고를 위하여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거나 시설물의 구조 및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공중이동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 의거해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전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조건부로 승인을 하였다.

그런데 **[내사]**는 조건부로 승인받은 공중이동시설 조성계획과 다르게 주행트랙 길이와 지지구조물의 수량 등을 변경하면서 전라남도로부터 사전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았고, 모노레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궤도운송법」 제5조 등에 따라 곡성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승인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내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곡성군수는

- ① 주식회사 **[내사]**가 산지전용신고 시 예치하지 않은 복구비를 예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앞으로 복구비를 예치받지 않은 채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거나 승인된 조성 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② 복구비를 예치받지 않은 채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지사는 주식회사 **[내사]**가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공중이동시설을 조성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조성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사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부실한 감정평가로 영업손실 과다 보상 추진

소 관 기관 곡성군

조 치 기관 곡성군

내 용

1. 업무 개요

곡성군은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③⑤지구 내 축사¹⁾로 인한 약취 해소를 위해 2023. 8. 8.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③⑤ 16 등에 설치된 메추리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²⁾에 따라 축사 이전에 따른 327백만여 원의 영업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였다.³⁾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르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은 4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1) 메추리사 등 총 7개 축사임

2)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모든 보상비의 세부 지원 기준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3) 영업 보상금은 주민 간 소유권 다툼으로 2025년 3월 현재까지 지급이 유보된 상태임

그리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5조와 제39조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관계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고, 감정평가사가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0조와 제13조 등에 따르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와 결정 의견(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등 감정평가액 결정 과정,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명칭 및 출처와 내용 등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곡성군이 정비사업에 따라 메추리사에 대한 영업 보상금을 결정할 때는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영업 보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곡성군(갑과)은 2023. 3. 10.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호남지사, 대표이사 DE)과 [■]감정평가사사무소(대표자 DF)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이 2023. 5. 15.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서 메추리사의 영업 보상금 산출근거와 결정 과정, 참고자료의 출처와 내용 등을 포함하지 않은 채 메추리 수량(45만 마리)과 감정평가액([■]감정 327,600,000원, [■]감정 327,000,000원)만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23. 8. 8. 메추리사에 대한 327백만여 원의 영업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4. 4. 1.~5. 21.) 중 메추리사의 영업 보상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내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⁴⁾는 메추리사의 영업이익을 산정하면서 [표 1]과 같이 최근 3년간 산란계 영업이익률⁵⁾ 중 가장 높은 40.3%를 적용하여 연평균 영업이익을 575백만여 원으로 산정한 후 4개월 영업이익을 191백만여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메추리사의 재무제표에 따른 연평균 영업이익은 113백만여 원으로 4개월 영업이익은 37백만여 원에 불과하여 153백만여 원이 과다 산정되었다.

[표 1] 영업이익 과다 산정 내역

(단위: 원, %)

구분	매출액 (A)	감정평가			실제		과다 산정액 (C-D)
		영업이익률 (B)	영업이익 (A×B)	4개월 영업이익(C)	영업이익	4개월 영업이익(D)	
평균	1,427,118,666	40.3	575,128,823		113,331,377		
2020년	1,326,649,000	40.3	534,639,547		191,700,000 (=575,128,823÷3, 천 원 이하 절사)	83,057,992 (=113,331,377÷3, 천 원 이하 절사)	37,770,000 (=153,930,000÷4)
2021년	1,663,667,000	40.3	670,457,801			298,716,351	
2022년	1,291,040,000	40.3	520,289,120			-41,780,211	

주: 최근 3년간 산란계 영업이익률은 2019년 -2.14%, 2020년 12.25%, 2021년 40.3%임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그리고 주식회사 **[내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는 메추리사의 이전비를 산정하면서 [표 2]와 같이 실제 메추리사의 사육두수는 15만 마리⁶⁾로 이전비는 45백만여 원인데도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채 곡성군에서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

4) **[내부]**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자이자 감정평가사인 DF가 2023. 6. 12. 사망함에 따라 **[내부]**감정평가사사무소는 2023. 6. 30. 폐업하여 감사기간 중 DF가 메추리사의 영업이익과 이전비 등을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주식회사 **[내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DG가 산정한 영업 보상금과 거의 일치(60만 원 차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DF도 DG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이익과 이전비를 산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5) 감정평가사 DG는 메추리사 소유자 DJ가 영업이익 산정에 필요한 매출장부 등 관련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가통계포털상 산란계 영업이익률을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산정하였다고 진술함

6) 메추리사 소유자 DJ는 매년 15만 마리의 메추리를 사육하였고, 이를 토대로 세무신고 등을 하였다고 진술함

설치신고 증명서상의 사육두수 45만 마리로 이전비를 산정(135백만여 원)함에 따라 이전비 90백만여 원이 과다 산정되었다.

[표 2] 이전비 과다 산정 내역

(단위: 원, 마리)

마리당 이전비 (A)	감정평가		실제		과다 산정액 (C-E)
	사육두수 (B)	이전비 (C=A×B)	사육두수 (D)	이전비 (E=A×D)	
302	450,000	135,900,000	150,000	45,300,000	90,600,0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그 결과 메추리사의 실제 영업 보상금은 83백만여 원인데도 2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균 감정평가액 327백만여 원으로 영업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244백만여 원만큼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곡성군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 잘못 산정된 메추리사의 영업 보상금은 재산정하여 지급하고, 부실하게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의뢰하여 조치를 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곡성군수는

① 잘못 산정된 메추리사의 영업 보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는 한편, 영업 보상금을 부실하게 감정평가한 주식회사 나아감정평가법인에 대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부실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영업 보상금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